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文學碩士學位論文

肅宗代 王世子 代理聽政 硏究

2013年 8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 史 學 科
崔 亨 輔

肅宗代 王世子 代理聽政 硏究

指導敎授　金 仁 杰

이 論文을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3年 4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史學科
崔　亨　輔

崔亨輔의 文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13年 6月

委 員 長 _____ (印)

副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국문초록】

肅宗代 王世子 代理聽政 硏究

崔 亨 輔

본 논문에서는 18세기 이후 조선왕실에서 지속적으로 시도된 王世子 代理聽政이라는 특이한 정치 현상에 주목하여 조선후기 최초의 사례로서 肅宗代의 사례를 통해 당시 정치문화의 일단을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肅宗代의 왕세자 대리청정은 肅宗이 질병으로 인해 도저히 國政을 처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 논의 과정에서 肅宗과 관료들은 세자에게 聽政을 시키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했으나, 청정을 하게 될 주체, 즉 세자의 교체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 되었다.

세자의 생모인 禧嬪 張氏가 賜死된 이후 왕실과 관료집단의 동향은 모두 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정신 질환으로 인해 종종 이상행동을 보일 뿐 아니라 자손생산 능력까지 의심받게 되자 그의 입지는 매우 좁아졌다. 肅宗은 이러한 세자의 국정 처리 능력에 의문을 품고 세자 교체에 대한 의견을 신료들에게 타진했는데, 이러한 그의 의견은 신료들의 거부로 인해 무마되었다.

肅宗代에 세자가 대리청정을 하게 된 현상에 대해 기존 학계에서는 肅宗과 執權 老論 세력 간에 정치적 거래가 있었다는 설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당시의 정황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점이 있다. 당시 肅宗과 老論이 세자의 교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데에는 왕조국가이자 유교국가로서 사대부층을 지배층의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던 조선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성격과, 세자 교체라는 사안이 의미하는 중대함, 당시 정국을 주도하던 老論系 관료들의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 반대 세력들의 반발에 대한 우려 및 세자의 정치 성향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왕세자 대리청정의 명분상의 근거 및 시행 타당성에 관한 논란은 앞서 世宗代에 詹事院 설치 과정에서 이미 진행된 바가 있었다. 조선왕조는 祖宗朝의 故事, 이른바 先王의 법에 커다란 권위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전통은 先王의 행위에 관념적인 명분을 부여하는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조정의 논의를 거친 사안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정책의 입안 및 개혁에 매번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현실적인 이점도 가지고 있었다. 덕분에 肅宗代의 대리청정은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당일에 바로 결정이 될 수 있었으며, 聽政節目을 마련하여 시행하기까지 보름의 기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肅宗代에 마련한 왕세자 대리청정의 聽政節目은 세자가 청정을 진행할 경우에 수반되어야 할 제반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왕과 세자 간의 업무 분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된다고 파악하였다. 肅宗과 신료들은 대리청정의 시행을 위한 시행 세목 가운데 왕과 세자 간의 업무 분담에 있어서 국왕의 업무를 문서의 종류나 내용별로 나누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꼈다. 肅宗과 신료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節目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계속 경주하였는데, 이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肅宗이 국왕의 여러 업무 가운데서도 인사권을 유독 강조하는 모습과 함께 당시의 국가 운영 체제가 노출하고 있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肅宗代의 대리청정은 국정 업무의 정체를 막고 국왕 업무를 경감시키는 한편 세자가 국정 업무에 관한 요령을 습득하고 왕위 계승을 위한 입지를 다지기를 기대한 조치였다. 그러나 당시 행해진 대리청정은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자는 국정 처리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을 자주 노출하였으며 시간이 지나도 적응하지 못했는데, 그럴수록 세자가 가지고 있던 지병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세자의 업무 태도는 신료들의 비판을 받았으며, 肅宗의 업무 분담에 있어서도 만족할 만한 효과는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肅宗代 이후 왕세자 대리청정은 19세기 초까지 꾸준히 시도되었다. 肅宗代의 사례는 景宗代 · 英祖代 · 純祖代 대리청정의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고, 시행을 위한 청정절목을 마련할 때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되는 등 후대의 정책 시행에 있어서 하나의 典範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18세기

후반 이후 왕세자 대리청정은 임시방편이 아닌 조선 왕실의 常例로 자리 잡아 《侍講院志》·《御定离院條例》·《大典會通》등의 官署志와 法典 등에 해당 내용이 수록될 정도로 일정 부분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본고에서는 肅宗代의 대리청정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에도 후대에 계승되어 지속적으로 시도된 이유에 대해 肅宗代의 사례가 비록 당시의 정치 현실에 기인하여 불가피하게 시행된 부분이 컸지만, 국왕의 업무가 과중해지는 가운데 전통적인 국가운영 체제만으로는 더 이상 국가를 경영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던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肅宗代의 대리청정 사례는 후대의 국왕들에게 혼자서 처리하기 힘든 국정 업무 중 일부를 누군가와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가능성을 열어 주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는 先代의 사례에서 제도 시행의 근거를 찾는 조선왕실의 문화적 전통과 당시의 정치적 · 사회적 배경이 맞물려 발생한 현상이었다. 禪讓과 參決이라는 방안 사이에서 왕세자의 대리청정은 기존의 관습과 국가 체제의 안정성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현실적인 타협안이었다.

주요어 : 숙종(肅宗), 왕세자(王世子), 경종(景宗), 대리청정(代理聽政), 청정절목(聽政節目), 국왕의 업무, 선왕의 법(先王之法)

학 번 : 2008-20047

목 차

머리말 · 1

一. 숙종 말기의 정치적 상황 · · · · · · · · · · · · · · 8
  1. 숙종의 병세와 왕실의 상황 · · · · · · · · · · · · 8
  2. 老論 주도 정국과 왕세자 · · · · · · · · · · · · · 18

二. 숙종대 왕세자 대리청정의 시행 · · · · · · · · · · 23
  1. 세자교체설과 왕세자 대리청정 · · · · · · · · · · 23
  2. 聽政節目과 국왕의 업무 분담 · · · · · · · · · · · 34

三. 숙종대 대리청정이 후대에 미친 영향과 그 의미 · · · 40
  1. 대리청정의 계승과 제도화 · · · · · · · · · · · · 40
  2. 숙종대 대리청정과 18세기 조선의 정치문화 · · · · 48

맺음말 · 53

참고문헌 · 56

Abstract · 61

머리말

代理聽政이란, 문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聽政을 代理한다'는 말이다. 聽政이란 말은 '政事를 귀기울여 듣는다'는 뜻인데, 여기서 聽에는 '들은 뒤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聽政이란 말은 '政事에 관한 신료들의 보고와 논의를 듣고 이에 대해 裁決하는 일'을 가리킨다.[1] 聽政은 왕조국가의 君王이 가지는 고유의 권한이자 책임이므로 이를 누군가 대리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사례라고 볼 수는 없다.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만 놓고 보자면 代理聽政은 '왕을 대신하여 정무를 처리한다'는 攝政이라는 용어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攝政을 흔히 代理聽政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용례를 살펴보면 攝政과 代理聽政은 용어상 분명한 차이가 있다. 攝政의 경우 시대와 신분을 막론하고 왕의 정무를 섭행하는 경우에 통용될 수 있는 용어이나, 代理聽政은 차기 왕위 계승권자, 朝鮮의 경우 王世子(王世孫)가 국정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사용되었던 것이다. 직접적인 예로 垂簾聽政의 경우 聽政, 혹은 攝政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代理聽政'이라고는 쓰지 않는다.[2] 垂簾聽政은 발을 드리우고(垂簾) 政事를 어린 왕과 '함께' 돌보는 것(同聽政)이므로 여기에 '代理'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代理聽政이란 차기 왕위계승권자가 現王이 생존해 있는 동안 君王의 庶務를 代理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3]

---

1) '聽'이 듣는 행위 뿐 아니라 들은 뒤 재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 대표적인 예로는 '聽訟'을 들 수 있다.

2) 攝政에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된 경우도 있다.
『憲宗實錄』3卷, 憲宗 2年(丙申, 1836) 2月 5日 기사
○副司直姜時煥疏曰: '惟我殿下, 沖年寶位, 煢煢銜恤, 我慈聖殿下, 夙夜簾闈, 孜孜憂勤。積慶攸餘, 天必祚宋, 而抑無疆之惟休惟恤也。 **自古輔幼主攝國政**, 此果何等時何等事也? 歷攷往牒, 治日常少, 亂日常多, 政宜承弼倚毗之地, 同寅協恭, 鞠躬盡瘁, 一以周、召、孔明之心爲心, 而不容一日之悠泛仫泄也明矣。' 因以勤聖學・恤民隱・立紀綱・節財用・詰戎政・革科弊六條陳勉。 **大臣三司, 以輔幼攝政句語之爲無嚴, 迭討之。** 初命屛裔, 諸臣爭益力, 遂鞫于王府。 大王大妃敎曰: "此事予意則初不至此, 而以有關主上聖孝之故, 勉從矣。 其間數次究問, 非但無端緖, 昨見爰辭, 天奪其魄云者, 足爲渠斷案, 主上方在沖年, 今若殺渠, 則八方人情, 不知其罪關係之莫重, 其不曰殺言者累初政乎? 罪人姜時煥絶島安置, 當日押送。 諸臣, 如或爭執, 則非但不知予本意, 非誠心事沖王之道也。"

장성한 왕세자가 정치적인 활동을 한 사례는 세계사적으로 드물지 않다. 軍務 · 儀典 등의 특정한 임무를 황태자 혹은 왕세자가 한시적으로 수행한 사례는 朝鮮의 경우는 물론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朝鮮後期에 시행된 代理聽政의 경우, 시행이 결정되면 왕세자는 父王의 '大朝'와 비견되는 '小朝', 즉 작은 조정의 임금으로서 이전과는 구별되는 지위를 부여받고 국정의 庶務를 無期限으로 대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사례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父王이 국왕 업무의 상당 부분을 왕세자에게 분할 · 양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왕세자의 권한과 용어 · 의전 등을 분명히 제한하고 국정의 주요한 사항을 자신에게 稟議한 후 처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父王이 왕세자에게 왕위를 禪讓하고 上王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것이나, 국정 업무를 전적으로 세자에게 위임하던 것과도 분명히 구분되는 양상이다.

朝鮮의 경우 왕세자가 政務를 섭행한 초기의 사례는 世宗代의 詹事院 설치에서 찾아 볼 수 있다.[4] 이러한 조치는 이후에 조선왕실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다가 조선 후기 肅宗代 이후 다시 등장하게 되었는데, 肅宗 末期에는 왕세자가 정무를 대리하기 위한 聽政節目을 정식으로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代理聽政'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肅宗代 이후 代理聽政은 景宗 · 英祖 · 正祖 · 純祖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다음의 <표1>은 조선 왕조 25명의 世子(世弟 · 世孫 포함)와 그 가운데 대리청정을 시행한 경우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1> 朝鮮時代 王世子 代理聽政의 現況과 推移

	世子	生沒	父王	冊封	代理聽政施行(世子/父王나이)	聽政期間	登極	비고
1	義安大君	1382-1398	太祖	1392	·	·	·	太宗에게 殺害
2	永安大君(定宗)	1357-1419		1398	·	·	1398	·
3	定安大君(太宗)	1367-1422	定宗	1400	·	·	1400	·
4	讓寧大君	1394-1462	太宗	1404	·	·	·	廢世子(1418)

3) 代理聽政은 代理, 혹은 代聽이라고 略稱하기도 한다.
4) 김순남,「朝鮮世宗代 말엽의 政治的 推移 - 世子의 代理聽政과 國王 · 言官間의 갈등」,『사총』61(2005)

5	忠寧大君(世宗)	1397-1450	太宗	1418	·	·	1418	卽位 후 4년간 太宗 兵權행사
6	文宗	1414-1452	世宗	1421	1442(28/45)	1442-1450	1450	·
7	端宗	1441-1457	文宗	1450	·	·	1452	·
8	懿敬世子(德宗)	1438-1457	世祖	1455	·	·	·	病死
9	海陽大君(睿宗)	1450-1469		1457	·	·	1468	庶事議決
10	燕山君	1476-1506	成宗	1483	·	·	1494	·
11	仁宗	1515-1545	中宗	1520	·	·	1544	·
12	光海君	1575-1641	宣祖	1592	·	·	1608	分朝活動
13	昭顯世子	1612-1645	仁祖	1623	·	·	·	分朝活動 · 病死
14	鳳林大君(孝宗)	1619-1659		1645	·	·	1649	·
15	顯宗	1641-1674	孝宗	1651	·	·	1659	·
16	肅宗	1661-1720	顯宗	1667	·	·	1674	·
17	景宗	1688-1724	肅宗	1690	1717(29/57)	1717-1720	1720	·
18	延礽君(英祖)	1694-1776	景宗	1721	·	·	1724	還收, 辛壬獄事
19	孝章世子(眞宗)	1719-1728	英祖	1725	·	·	·	夭絶
20	思悼世子(莊祖)	1735-1762		1736	1749(14/56)	1749-1762	·	賜死
21	正祖	1752-1800		1759	1775(23/82)	1775-1776	1776	·
22	文孝世子	1782-1786	正祖	1784	·	·	·	夭絶
23	純祖	1790-1834		1800	·	·	1800	·
24	孝明世子(翼宗)	1809-1830	純祖	1812	1827(18/38)	1827-1830	·	病死
25	純宗	1874-1926	高宗	1875	·	·	1907	시도(1907)

※ 비고 : 본고에서는 조선시대의 왕세자 대리청정제도에 주목하였으므로 세자책봉을 거치지 않고 왕위에 오른 인물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朝鮮王朝實錄』를 참조하였다.

위의 <표1>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25명의 世子(世弟 · 世孫 포함) 가운데 代理聽政을 경험한 세자는 5명에 불과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朝鮮 前期에는 世宗代에 詹事院이 설치된 이후로 代理聽政을 시행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世祖 末年에 睿宗에게 대신들과 庶事를 議決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으나[5] 명령을 이행하는 데 따른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世祖 사후 睿宗이 즉위하면서 貞熹王后의 垂簾聽政과 院相制의 형태로 국정이 운영된 것을 참고할 때, 그 이전시기의 '議決庶事'도 대리청정에 비견될 만한 조

5) 『世祖實錄』 41卷, 世祖 13年(丁亥, 1467) 3月 7日 기사.
『世祖實錄』 41卷, 世祖 13年(丁亥, 1467) 3月 10日 기사.

치는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6]

肅宗代의 왕세자 대리청정은 조선후기 최초로 世宗代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리청정의 규모와 절차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 景宗代에는 王世弟였던 延礽君(훗날의 英祖)의 대리청정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는데(辛壬獄事), 이로 인해 본인 스스로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英祖는 즉위한 뒤 세자의 대리청정을 명령하였다. 英祖의 아들이었던 思悼世子의 대리청정은 부왕이 세자를 처단하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났는데, 英祖는 말년에 다시 王世孫(正祖)의 대리청정을 단행하였다. 英祖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대리청정과 당시의 정치 환경이 가지는 관계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英祖에 이어서 즉위한 正祖는 세자가 장성하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대리청정을 시행할 기회를 갖지 못했으나 그의 뒤를 이은 純祖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孝明世子에게 대리청정을 명하였다.[7] 純祖代 이후의 시기를 흔히 外戚勢道政治期로 일컫는데, 19세기를 통틀어 왕세자를 경험하고 왕위에 오른 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왕위계승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러한 가운데 왕실의 어른으로서 大妃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당연히 대리청정은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는데, 韓末 高宗代에 이르러 황태자에게 대리청정을 시도한 사례가 발견된다. 高宗은 외부의 강압에 의해 폐위될 지경에 처하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황태자(훗날의 純宗)에게 대리청정을 명하는 방안을 택했는데, 비록 그의 이러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대리청정이 조선 후기 이후 왕실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8]

---

6) 임금의 곁에서 세자가 國事의 재결에 참여하는 것을 '參決'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리청정과 분명히 구분되는 사안이다. 세조대의 사례는 代理聽政보다는 參決에 가까운 조치였을 것이다. 반면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에서 발견되는 왕세자의 分朝活動은 국가의 비상시국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이후 왕세자의 정치적 지위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宣祖는 在位 26年 이후 光海君에게 攝政을 맡길 것을 주장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전란을 계기로 왕세자의 지위가 주목을 받게 된 경우이다.

7) 正祖는 사망 당시 세자의 나이가 10세에 불과하였으므로 현실적으로 대리청정을 시행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평소 세자에게 선위하고 상왕으로 물러나겠다는 언급을 하였다는 사실은 전후의 왕세자 대리청정과 함께 18세기의 왕권, 혹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8) 『高宗實錄』 48卷, 光武 11年(丁未, 1907) 7月 18日(陽曆) 기사.
『純宗實錄』 1卷, 光武 11年(丁未, 1907) 7月 19日(陽曆) 기사.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왕세자 대리청정은 조선시대를 통틀어 肅宗 말기 이후 18세기 초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연속적이면서도 집중적으로 시행, 또는 시도되었다. 19세기의 왕위계승 양상을 고려했을 때, 肅宗代 이후 가능한 거의 모든 상황에서 대리청정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왕조국가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왕위계승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와 경향성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왕세자 대리청정 자체에 주목한 연구나 通時的 관점에서의 분석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9]

현재까지 조선의 대리청정 시기를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대리청정의 시행을 둘러싼 王權과 臣權의 대립, 혹은 朋黨간의 갈등에 주목하여 시행의 의도나 당시의 정치적 동향을 설명하는 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었고, 대리청정이라는 조치 자체가 갖는 정치사적 의미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10] 최근에는 왕세자 대리청정과 관련하여 왕세자 대리청정기에 왕세자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료들을 다룬 연구가 진행된 바 있고,[11] 왕세자의 정치 활동과 대리청정을 주제로 연재한 김문식의 글은 일관하는 흐름이나 원인을 분석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조선시대 왕세자의 정치활동에 관한 각각의 사례를 정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대리청정의 흐름을 제시하였다.[12] 이 밖에 왕실 교육의 관점에서 대리청정을 세자의 정치실무교육의 일환으로서 단편적으로 언급한 경우도 더러 확인되지만,[13] 왕세자 대리청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피상적인 이해의 수준을

---

9) 代理聽政 자체에 주목한 논문으로는 신용우, 「翼宗代理聽政에 대한 考察 - 代聽施行 過程과 政務處理를 중심으로」(한양대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6);「肅宗時世子聽政에 대하여 : 世子聽政下敎와 節目을 中心으로」(『송원대학논문집』15, 1989)가 있을 뿐이다.

10) 김순남,「朝鮮世宗代 말엽의 政治的 推移 - 世子의 代理聽政과 國王 · 言官間의 갈등」(『사총』61, 2005); 장종진,「肅宗의 景宗 王位繼承 의도 검토」(『남도문화연구』14, 2008); 윤 정,「숙종 45년, 국왕의 기로소 입소 경위와 그 정치적 함의」(『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43, 2012); 신용우, *Ibid.* ; *Ibid.*; 김영민,「사도세자의 생애와 '임오화변'의 정치적 의의」(『역사문화논총』4, 2008); 김명숙,「19世紀 反外戚勢力의 政治動向 - 純祖朝 孝明世子의 代理聽政 例를 中心으로」(『조선시대사학보』3, 1997)
이민아,「孝明世子 · 憲宗代 宮闕營建의 政治史的 의의」,『한국사론』54(2008)

11) 조미은,「조선시대 왕세자 대리청정기 문서 연구」,『고문서연구』36(2010)

12) 김문식,「세종의 국왕권 이양방안, 대리청정」(2005.7);「선조대의 대리청정 논의」(2005.12); 「소현세자의 분조와 외교활동」(2007.1); 「왕세자 경종의 대리청정」(2007.3); 「왕세제 영조의 대리청정」(2007.6); 「사도세자의 대리청정」(2008.12); 「세손 정조의 대리청정」(2009.6) (이상 모두 계간지『문헌과해석』에 기획연재된 글)

13) 김문식 · 김정호,『조선의 왕세자교육』(김영사, 2003); 김정화,「朝鮮 英 · 正祖代 世子(世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대상이 되는 현상으로서 그 정비과정을 다루거나 勳戚政治라는 정치형태와 연관시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비교적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垂簾聽政과는 사뭇 대조되는 부분이다.[14]

기존 연구들에서는 왕세자 대리청정의 시행 의도를 크게 두 가지로 보았다. 교육적인 목적으로서 왕세자의 정치 실무 수업, 혹은 왕으로서의 자질을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라고 파악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서 국왕의 정치적인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설명들은 당시의 정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의 정치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세자가 왕위에 등극하기 전에 국정업무를 처리하는 경험을 쌓는 일은 실제로 대리청정을 통해 기대한 효과 중 하나였으나,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였다. 조선후기 왕세자 대리청정의 시행을 왕실 교육의 측면에서만 다루는 것은 조선 사회에서 대리청정이라는 조치가 갖는 정치적 민감성이나 중요성을 외면하는 것이 된다. 게다가 세자의 정치 실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굳이 많은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리청정을 시행하기보다는 이전 시기에도 종종 시행되었던 '參決'의 방식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대리청정을 시행할 때 일부 신료들은 세자가 국왕을 보조하면서 국정에 참여하는 參決의 방식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세자의 자질에 대한 시험이라는 분석은 肅宗代의 사례(景宗)에 대한 일각의 당파적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앞서 언급한 조선후기의 왕세자 대리청정이라는 일련의 현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景宗과 思悼世子의 경우 실제 자질상의 문제가 불거졌으나 이에 대한 왕실과 관료사회의 대응방식을 살펴봤을 때 당초에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孫)敎育의 實態」(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신명호,『조선왕실의 자녀교육법』(시공사, 2005)등.

14) 임혜련,「조선시대 수렴청정의 정비과정」『조선시대사학보』27(2003);『19세기 垂簾聽政 硏究』(숙명여대 박사학위 논문, 2008);「19세기 수렴청정의 특징-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조선시대사학보』48(2009);「한국사에서 섭정 · 수렴청정권의 변화 양상」『한국사상과 문화』62(2012)
한춘순, 「明宗代 垂簾聽政期(1545~1553년)의 '勳戚政治' 成立과 軍營構造」,『한국사연구』106(1999)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대리청정 사례를 살펴보면 오히려 조선 후기 왕실에서 세자가 차지하고 있는 강고한 지위를 새삼 확인할 수 있는데, 시험이라는 것이 통상 그 결과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염두에 두고 행해지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해석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국왕이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해 대리청정의 방식을 사용했다는 분석은 국왕들이 종종 선택하는 '讓位波動'과 대리청정을 동일시한 영향이거나, 조선시대의 臣權을 과도하게 설정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설명은 특히 19세기 純祖代의 孝明世子의 사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학계의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高宗代의 사례를 통해서도 일정부분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으나, 대리청정을 前史가 있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라고 파악한다면 당시의 정치사적 의미에만 주목하기보다는 전후 시기에 행해진 왕세자 대리청정의 경향성, 연속성을 바탕으로 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18세기 초부터 19세기 초까지 朝鮮 王室에서 꾸준히 발견되는 王世子 代理聽政이라는 일련의 현상에 주목하여 우선 조선후기 최초의 대리청정으로서 肅宗代의 사례를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당시 어떠한 정황 속에서 대리청정이 시행되었으며,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시행 이후 후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18세기 초 조선사회의 정치적 상황과 국가운영 체제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 특징적인 모습을 포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첫 장에서는 우선 肅宗代의 정치적 상황을 개괄하였는데, 黨爭史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대리청정 시행을 앞둔 시점의 肅宗과 세자의 입장에서 당시의 왕실과 관료사회의 흐름을 서술해보고자 하였다. 본론 2장에서는 대리청정을 시행하기까지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검토해 보고 어떤 과정을 거쳐 대리청정을 시행하게 되었는지 살펴본 다음, 대리청정 시행을 위한 聽政節目을 마련한 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肅宗代에 대리청정이 시행된 이후 그것이 후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肅宗代 대리청정에서 포착할 수 있는 18세기 조선 사회의 정치상, 정치 문화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一. 숙종 말기의 정치적 상황

1. 숙종의 병세와 왕실의 상황

肅宗(1661～1720)은 14세의 나이에 즉위하여 46년간 국정을 통치하였다. 이는 당시까지만 해도 조선의 국왕으로서는 가장 긴 재위 기간이었으며, 조선의 역대 국왕 중에서도 두 번째로 긴 재위기간이었다.[15] 이러한 사실만 놓고 본다면 肅宗의 건강이 다른 왕들에 비해 월등하였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생애 전반을 놓고 보았을 때 오히려 병약한 편에 속하였다. 그는 즉위초에 앓았던 천연두를 제외하더라도 오랫동안 다양한 질병으로 고생하였는데, 자신의 질환이 성격 · 체질상의 문제와 과도한 업무에서 연유한다고 파악하였다.[16] 肅宗의 이러한 질환은 즉위 31년(乙酉, 1705)에 이미 왕세자(昀, 1688～1724, 훗날의 景宗)에게 禪位하고자 한다는 명을 내리는 지경에 이르렀다.[17] 당시 肅宗의 나이는 45세였는데, 비록 이 때의 명령은 신하들과 세자의 만류로 3일만에 환수되었으나 그 뒤로도 肅宗의 건강상태는 잠시 나았다 심해지기를 반복하면서 악화될 뿐이었다.[18]

肅宗의 건강상태는 재위 42년(丙申, 1716)을 전후하여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평소 앓고 있던 지병들이 악화된 데다가 眼疾이 심해져 문서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19] 肅宗은 이전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都目政이나 啓覆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나,[20] 이때에 이르러서는 肅宗 스스로 영영 失明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상태가 악화

---

15) 조선왕조에서 가장 오래 재위했던 왕은 21代王 英祖(1694-1776, 在位 1724-1776)로, 52년간 왕위에 있었다.

16) 『肅宗實錄』 14卷, 9年 癸亥(1683) 10月 18日 기사.
『肅宗實錄』 40卷, 30年 甲申(1704) 12月 11日 기사.

17) 『承政院日記』 肅宗 31年 乙酉(1705) 10月 29日 기사.

18) 『肅宗實錄』 56卷, 41年 乙未(1715) 11月 19日 기사.

19) 『肅宗實錄』 58卷, 42年 丙申(1716) 12月 1日 기사.
『承政院日記』 肅宗 43年 丁酉(1717) 6月 9日 기사.

20) 『肅宗實錄』 47卷, 35年 己丑(1709) 12月 30日 기사.
『肅宗實錄』 49卷, 36年 庚寅(1710) 11月 11日 기사.

되었다.[21] 肅宗으로서는 다시 한 번 後嗣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代理聽政의 명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치였다.

肅宗代의 조선 왕실은 孝宗代 이후 顯宗(1641～1674)과 肅宗(1661～1720)이 양대에 걸쳐 獨子였으므로 王孫이 귀한 상태였다. 왕실에서는 귀한 왕손이 태어나기를 기대했지만 기대한 왕자의 소식은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즉위 초반 孝宗(1619～1659)의 조카, 肅宗에게는 아저씨뻘이 되는 왕족들의 역모사건이 정국을 크게 흔들었다(庚申換局).[22] 世子嬪에서 왕비가 된 仁敬王后(1661～1680)는 두 명의 공주를 낳았지만 모두 요절하였고, 왕비도 20세의 이른 나이에 사망하였다.[23] 仁敬王后의 뒤를 이은 繼妃 仁顯王后(1667-1701)는 책봉된 지 7년이 넘도록 자손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조선 왕실이 왕자의 탄생에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는 肅宗 14년(戊辰, 1688) 後宮 禧嬪 張氏(1659～1701)가 첫 왕자를 출산한 뒤 肅宗이 보여준 반응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肅宗은 왕자의 元子 定號와 世子 冊封 과정에서 몹시 서둘렀을 뿐 아니라 中殿인 仁顯王后를 폐하고 왕자의 생모를 왕비로 책봉하는 등의 무리수를 두었는데, 이러한 肅宗의 조치는 정국에 큰 소요를 일으켰으며(己巳換局), 이후 폐출된 왕비를 복위시키고 세자의 생모를 賜死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甲戌換局).

仁顯王后는 복위된 뒤에도 끝내 자식을 생산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으나, 그 사이 肅宗은 다른 후궁에게서 두 명의 왕자를 더 얻었다. 仁顯王后에 이어 왕비가 된 仁元王后(1687-1757)도 끝내 자손을 생산하지 못하였으니, 肅宗이 다시 왕위계승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을 때쯤 왕실에 왕자는 禧嬪 張氏와의 사이에서 낳은 왕세자 昀(景宗, 1688～1724), 淑嬪 崔氏와의 사이에서 낳은 延礽君 昑(英祖, 1694～1776), 禛嬪 朴氏와의 사이에서 낳은 延齡君 昛(1699～1719) 3

---

21) 『肅宗實錄』 60卷, 43年 丁酉(1717) 7月 19日 기사.

22) 당시 역모사건에 연루된 핵심적인 인물들의 증언 가운데 肅宗이 젊은 나이에 후사를 낳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약점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발견된다.
『肅宗實錄』 9卷, 6年 庚申(1680) 4月 6日 기사
…枏於刑問施威之際, 承款曰: "上年秋冬之交, 會堅於元老家, 堅曰: '**主上春秋方盛, 玉體未寧, 且無儲位。若有不幸, 國事歸於何地乎?** 國事弊痼, 無可爲者。他日須善爲之, 且打破黨論宜當。' 枏聽來驚愕, 不爲答語, 因爲起出。" …

23) 『肅宗實錄』 10卷, 6年 庚申(1680) 10月 26日 기사.

명으로, 공교롭게도 모두 후궁 소생이었다.

肅宗代 이후 자주 언급되는 이른바 '三宗血脈'이란 표현은 孝宗 · 顯宗 · 肅宗의 혈맥을 이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다.[24] 이 표현은 왕실 혈통의 정통성, 왕위 계승의 당위성을 闡明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累代에 걸쳐 누적된 당시 왕실의 위기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肅宗 43년(丁酉, 1717) 당시 세자의 나이는 30세, 延礽君은 24세, 延齡君은 19세였는데, 延齡君의 탄생 이후 왕실의 자손 소식은 끊긴 지 거의 20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肅宗 老年에 다시 왕실의 자손 문제가 대두된 것이었다.[25]

肅宗에게는 3명의 왕비와 6명의 후궁, 3명의 왕자가 있었다. 이하에서는 대리청정이 시행된 肅宗 43년(1717)을 기준으로 肅宗과 왕세자를 둘러싼 왕실 구성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의 <표2>는 당시의 왕실 계보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표2> 肅宗末期 王室系譜圖

---

24) 『景宗實錄』4卷, 1年 辛丑(1721) 8月 20日 기사.
『英祖實錄』36卷, 9年 癸丑(1733) 12月 7日 기사.
『英祖實錄』40卷, 11年 乙卯(1735) 1月 21日 기사.

25) 肅宗은 세자가 자손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약을 쓰기도 하였지만 별 효험을 보지 못하였다. 實錄의 내용과 『丹巖漫錄』의 내용을 보면 肅宗과 近臣들은 세자의 자손생산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肅宗實錄』 46卷, 34年 戊子(1708) 1月 15日 기사
○癸亥/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崔錫鼎、左議政李濡等, 皆以世子尙無螽斯之慶, 滋補求嗣之意, 縷縷陳達。 上曰: "君臣猶父子, 何語可隱? 『詩』不云乎? '妻子好合, 如鼓瑟琴。' 此一節, 不能如此。一年二年, 以至于今, 一向用藥, 實無依據矣。"** 錫鼎曰: "自上別加開諭, 世子亦豈不豁然開悟乎?" 右議政徐宗泰曰: "自上若不加聲色, 從容誨諭, 則似有益矣。" 上曰: "屢次開諭, 終不回心, **嗣續之慶, 漸至晩暮, 誠爲悶切。** 然大臣所達如此, 當更開諭。"
閔鎭遠, 『丹巖漫錄』(1728, 장서각 소장본 K3 0613) v.1, 58a-b.
丁酉秋, 命王世子代理庶務. 世子自甲申乙酉間漸有疾祟. 有時向壁而坐, 細語諄諄, 有若與人酬答者然. 或中夜彷徨於階庭之間, 或步或坐. 飮食起居行動擧止, 不覺其大段有異, 而精神不能照管, 知覺或不分明. **且下氣痿弱, 不知有男女之事, 春秋三十, 不能近女色. 雖或與宮女輩爲幼兒戲謔, 而非有近色之意也.** 侍上或有不遜之擧, 而亦非有悖常之意, 只出於不自覺也. 每於上之引見諸臣時, 以褻服露面窓間而見之, 諸臣俯伏而已. 上則猶不知其病之至此, 謂其性行之不美, 每獨坐咄咄而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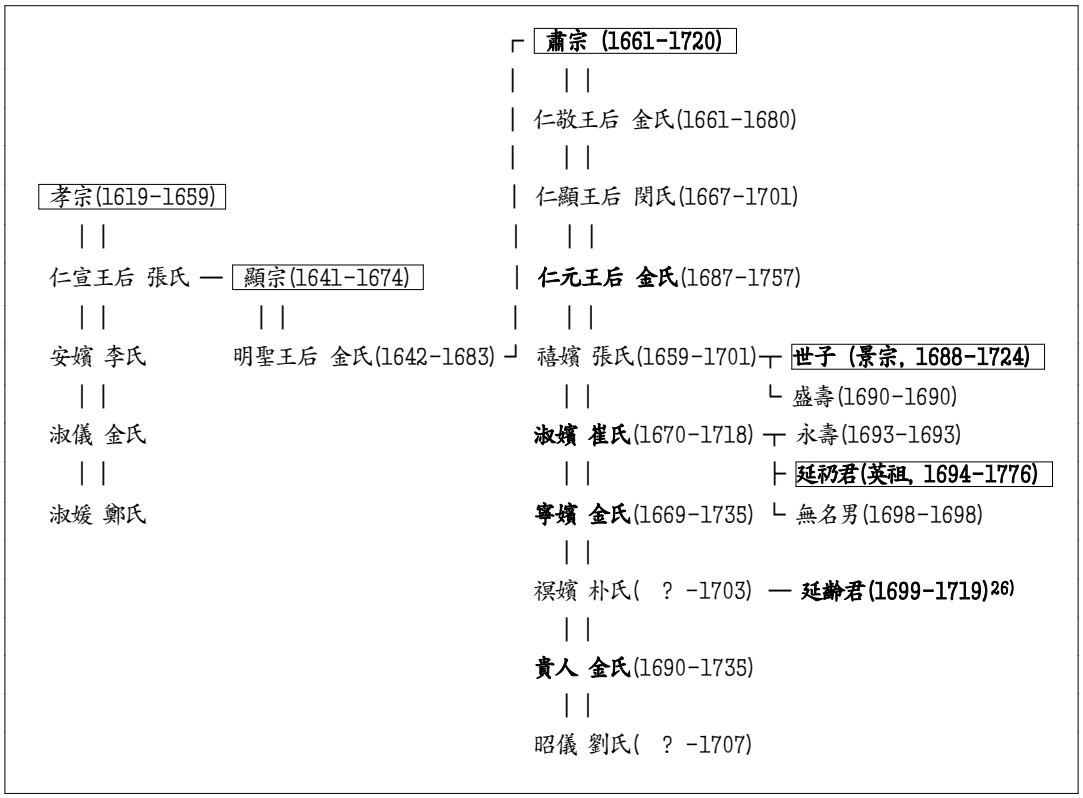

※ 비고 : 본고에서는 왕위 계승 후보로 거론될 수 있는 왕자만을 표기하고 公主 · 翁主에 대한 정보는 생략하였다. 『當代璿源錄』·『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記』를 참조하였다.

왕세자는 肅宗 14년(戊辰, 1688)에 內人 출신 昭儀 張氏의 소생으로 태어났다.[27] 肅宗은 새로 태어난 왕자가 계승자로서의 지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왕자는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元子 定號가 되었고, 昭儀 張氏는 원자를 생산한 공으로 禧嬪이 되었다.[28] 3세가 되자 元子는 世子 冊封까지 받게 되어 명실상부한 조선의 '國本'이 되었다.[29] 그러나 정실 왕비가 아직 21세에 불과한 상태에서 국본의 자리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는 이유로 후궁 소생의 왕자를 서둘러 세자에

26) 延礽君의 兒名은 禧壽 , 延齡君의 兒名은 仁壽였다.
27)『肅宗實錄』19卷, 14年 戊辰(1688) 10月 27日 기사.
28)『肅宗實錄』20卷, 15年 己巳(1689) 1月 15日 기사.
29)『肅宗實錄』22卷, 16年 庚午(1690) 6月 16日 기사.

책봉한 것은 당시의 宗法 秩序와 배치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무리가 있는 조치였다.[30] 뿐만 아니라 세자 책봉 과정에서 왕비인 仁顯王后를 폐출하고 원자의 생모를 왕비로 책봉하면서 肅宗은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고, 5년 뒤 다시 결정을 번복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그러했다. 肅宗의 이러한 처사는 세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자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와 얽히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肅宗 27년(辛巳, 1701), 복위된 仁顯王后의 죽음에 禧嬪 張氏가 연관되었음이 드러나 세자의 생모가 賜死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14세였던 세자의 지위는 극도로 불안해질 수 밖에 없었는데, 王妃의 아들에서 後宮의 아들로, 다시 罪人의 아들로 처지가 바뀌면서 명분상 위축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을 뿐 아니라 세자의 생모와 세자를 지지하던 세력이 조정에서 힘을 잃는데 따른 것이었다. 게다가 조선 왕실은 일찍이 私親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는 왕이 등극했을 때 어떠한 위험이 수반되는지 廢主 燕山君(1476~1506)을 통해 경험한 바가 있었다. 세자는 차기 왕위 계승권자에게 기대되는 정국의 안정된 미래라는 측면에서도 큰 약점을 갖게 된 것이다.

禧嬪의 賜死와 함께 세자의 지위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불거졌던 世子謀害說을 통해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辛巳年(1701)에 禧嬪과 그녀의 오라비 張希載의 罪狀을 수사하면서 金春澤 등 老論系 인사들이 세자를 謀害하였다는 진술이 나왔는데도 鞫案 기록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은폐되었다는 것이다. 이 논란은 肅宗 32년(丙戌, 1706) 任溥 · 李潛 등 少論측 인사들에 의해 제기되어[31] 獄事가 해를 넘기도록 수습되기는커녕 더욱 격렬해졌다. 少論 측에서는 老論이 세자를 꺼리고 심지어는 謀害했다고 주장하였고, 老論 측에서는 少論이 터무니없는 무함으로 상대 당파를 제거하려 한다고 변명하였다. 肅宗은 세자가 생모의 문제로 인해 위협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책을 마련하였지만, 世子保護論이 언급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자의 지위는 이미 위협을 받고 있었다.

延礽君은 세자의 생모인 張氏가 다시 禧嬪으로 강등되고 仁顯王后가 복위되던 해(肅宗 20년 甲戌, 1694) 무수리 출신이었던[32] 淑儀 崔氏 소생으로 태어났다.[33] 왕자

---

30) 이영춘,『朝鮮後期 王位繼承 硏究』(집문당, 1998) 277-296쪽.

31)『肅宗實錄』43卷, 32年 丙戌(1706) 5月 29日 기사.
『肅宗實錄』44卷, 32年 丙戌(1706) 9月 17日 기사.

32) 정병설,『권력과 인간』(문학동네, 2012)34-35p에서는 淑嬪 崔氏의 출신이 궁녀의 여종에 해당하는 '각심이'였을 것이라는 說에 무게를 실었다. 그 설에 일리가 있어 일정부분 동의하는

의 생모는 延礽君을 생산하기 한 해 전인 肅宗 19년(1693, 癸酉)에도 왕자(永壽)를 출산하였는데, 그녀가 그 즈음 肅宗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는 후궁이었으므로 中殿의 자리에 있던 禧嬪 張氏와는 不和하였다. 淑儀 崔氏는 이후 왕자를 생산한 공으로 貴人이 되었으며[34] 肅宗 25년(己卯, 1699) 淑嬪으로 陞級되었다.[35] 淑嬪의 등장은 禧嬪의 몰락과 때를 같이하였는데, 『肅宗實錄』에 의하면 延礽君의 생모는 仁顯王后와 친밀한 관계였으며 仁顯王后 사후 禧嬪 張氏가 몰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36]

왕자로서 延礽君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는 단서는 그리 많지 않다. 우선 延礽君의 탄생을 즈음하여 肅宗의 총애가 禧嬪에게서 떠나 淑嬪에게 기울어 있었던 만큼 延礽君도 肅宗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延礽君의 冠禮와 嘉禮·出閤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肅宗 이전까지 조선 왕실에는 왕자의 관례를 치르기 위한 節目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오직 왕세자의 관례에 대한 기록만이 있었다. 肅宗은 延礽君의 관례를 치르기 위해 禮曹에 명하여 舊例를 상고하여 節目을 稟定하라고 명하였는데, 중국의 『大明集禮』와 조선의 『國朝五禮儀』 외에도 實錄과 『承政院日記』를 찾아보도록 하였다. 비록 왕세자의 例에 비해 한 등급씩 감해서 거행하도록 하였지만, 왕실에서 왕자의 관례를 준비하면서 실록을 살펴가며 節目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常例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료들의 비판이 이어졌다.[37] 관례에 이어 이듬해 행해진 延礽君의 가례와 출합 과정에서도 肅宗은 각별히 정성을 쏟았는데, 實錄에서조차 이에 대해서 지나친 점이 있다고 비평하였다.[38]

延礽君의 남다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宗親 대표와 왕자로서 延礽

바이다.

33) 仁顯王后가 복위된 것은 4월, 淑儀 崔氏가 왕자를 낳은 것은 9월의 일이다.
『肅宗實錄』26卷, 20年 甲戌(1694) 4月 21日 기사.
『肅宗實錄』27卷, 20年 甲戌(1694) 9月 20日 기사.

34)『肅宗實錄』28卷, 21年 乙亥(1695) 6月 8日 기사.

35)『肅宗實錄』33卷, 25年 己卯(1699) 10月 23日 기사
○陞貴人崔氏爲淑嬪, 淑媛劉氏、朴氏爲淑儀。 用端宗大王復位慶也。

36)『肅宗實錄』35卷, 27年 辛巳(1701) 9月 23日 기사.

37)『肅宗實錄』38卷, 29年 癸未(1703) 11月 18日 기사.
『肅宗實錄』38卷, 29年 癸未(1703) 12月 15日 기사.

38)『肅宗實錄』39卷, 30年 甲申(1704) 2月 21日 기사.
『肅宗實錄』39卷, 30年 甲申(1704) 4月 17日 기사.

君의 역할이다. 延礽君은 進宴이나 進賀, 혹은 尊號를 올리는 등의 왕실 행사가 있을 때 세자와는 별개로 종친 대표로서 肅宗에게 의견을 진달하고, 행사 진행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肅宗의 國喪이 임박했을 때에는 大臣들과 酬答하고 仁元王后의 下敎를 세자와 대신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國葬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왕세자의 執喪을 곁에서 보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39] 이러한 정황들은 延礽君이 주변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었으며 세자를 제외한 肅宗의 第一王子로서 왕실 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延齡君은 肅宗 25년(己卯, 1699) 尙宮 출신이었던 淑媛 朴氏 소생으로 태어났다. 淑媛 朴氏는 이미 10여 년간 承恩尙宮으로 있다가 왕자를 회임하고 나서 淑媛에 봉해졌고,[40] 왕자를 출산하고 곧 淑儀가 되었다.[41] 肅宗 27년(1701)에 貴人,[42] 肅宗 28년(1702)에는 嬪의 자리에 올라 禛嬪이 되었으나[43] 이듬해(肅宗 29년, 1703) 사망하고 말았다.[44] 당시 왕자의 나이는 5세였는데, 肅宗은 이를 가엾게 여겨 왕자에게 延齡君이라는 君號를 내리고 곧이어 宗親府 有司堂上의 관직을 제수하였다.[45] 신료들은 전례에 비춰 보았을 때 아직 왕자가 幼沖하다는 이유로 명령을 환수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肅宗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46]

延齡君은 肅宗 33년(丁亥, 1707), 商山 金氏를 맞이하여 嘉禮를 치루었으며,[47] 肅宗 41년(乙未, 1715)에 出閤하였다. 이후 延齡君은 都摠府 都摠管・司饔院 都提調・宗簿寺 都提調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으나,[48] 肅宗 45년(己亥, 1719) 21세의

---

39) 國喪중에 延礽君이 보여준 행동들은 일반적으로는 세자의 책무에 해당한다. 당시 인사불성이었던 세자를 연잉군이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肅宗 國喪과 관련된 자세한 정황은 『承政院日記』 肅宗 46年 庚子(1720) 6月 3日~ 9日 기사를 참조할 것.

40) 『肅宗實錄』 32卷, 24年 戊寅(1698) 11月 4日 기사.

41) 『肅宗實錄』 33卷, 25年 己卯(1699) 10月 23日 기사에 의하면 端宗의 복위를 기념하여 당시 延礽君의 생모인 貴人 崔氏와 淑媛 柳氏 등과 함께 한 등급씩 陞級되었다.

42) 『承政院日記』 肅宗 27年 辛巳(1701) 3月 23日 기사.

43) 『肅宗實錄』 37卷, 28年 壬午(1702) 10月 18日 기사.

44) 『肅宗實錄』 38卷, 29年 癸未(1703) 7月 15日 기사.

45) 『肅宗實錄』 38卷, 29年 癸未(1703) 9月 3日 기사.
『承政院日記』 肅宗 29年 癸未(1701) 9月 9日 기사.

46) 그러나 司憲府 등의 연이은 상소로 延齡君의 肅謝는 2년이 지난 肅宗 31년(乙酉, 1705) 延齡君이 7세가 된 후에야 이루어졌다.
『肅宗實錄』 42卷, 31年 乙酉(1705) 9月 9日 기사.

47) 『肅宗實錄』 45卷, 33年 丁亥(1707) 2月 6日 기사.

48) 『承政院日記』 肅宗 42年 丙申(1716) 12月 26日 기사.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49] 肅宗은 延齡君의 죽음을 전해듣고 몹시 슬퍼하여 병중임에도 직접 祭文과 墓文을 지었으며, 喪次에 親臨하여 擧哀하였다.[50] 延齡君에게는 孝憲의 諡號가 내려졌다.

延齡君은 생전에 肅宗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肅宗은 신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延齡君의 封號를 단행하였고, 嘉禮와 出閤 과정에서 보이는 肅宗의 정성 또한 延礽君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肅宗은 延齡君의 私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延礽君 때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이 또한 신료들의 비판을 받았다.[51]

신료들은 매번 延礽君과 延齡君에 대한 肅宗의 처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비단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시기에 肅宗이 세자에게 냉담하였던 것과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肅宗은 禧嬪 賜死 이후 세자를 심하게 꾸짖는 일이 잦았다고 하는데,[52] 이 시기는 延礽君과 延齡君의 嘉禮 · 出閤이 논의된 시기와 거의 맞아떨어진다. 세자의 보호에 그토록 적극적이던 肅宗이 세자에게 실망하고 총애를 거두던 시기가 바로 세자를 제외한 두 왕자에게 총애를 보인 시기였던 것이다. 延齡君에 대한 肅宗의 각별한 총애를 전하는 내용 가운데는 심지어 肅宗이 세자를 대체할 인물로 延齡君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53] 이러한 사례들은

『承政院日記』 肅宗 44年 戊戌(1718) 4月 12日 기사.
『承政院日記』 肅宗 44年 戊戌(1718) 6月 14日 기사.
『承政院日記』 肅宗 45年 己亥(1719) 9月 12日 기사.
49)『承政院日記』 肅宗 45年 己亥(1719) 9月 26日 기사.
『肅宗實錄』64卷, 45年 己亥(1719) 10月 2日 기사.
50)『肅宗實錄』64卷, 45年 己亥(1719) 10月 11日 기사.
51)『肅宗實錄』46卷, 34年 戊子(1708) 10月 30日 기사.
52) 李建昌,『黨議通略』, 京城朝鮮光文會(1912) 61쪽
… 自崔錫鼎之罷相, 而無以保護言於上者. 上忽荐下嚴敎, 責世子過失, 中外惶惑莫測.…
『丹巖漫錄』v.1, 44a-44b
… 上自業同獄後, 已燭凶徒之情狀, 及是尤爲深惡痛疾。世子時年十四, 而性度不能篤實堅確, 故遭此人倫之大變, 而別無傷痛慘怛之色矣。是後世子凡事少違於聖志, 則輒擧張氏之名而責之曰: “某之所生, 豈不然乎?” 必厲聲嚴責, 世子震怒罔措。其後世子得奇疾, 終成國家之禍。或以爲疾祟於驚恐云. …
인용문에 언급되는 業同의 獄事는 『承政院日記』肅宗 22년(丙子, 1696) 6월 6일 기사에 보인다. 전체적인 내용은 辛巳年 禧嬪 賜死 이후의 정황을 다루고 있다.
53) 『丹巖漫錄』v.1, 61a
冬, 王子延齡君旧卒。延齡爲人溫柔驚敏, 上鍾愛之, 過於延礽。延礽則頻遭呵責, 且以居私親喪而生子, 責以無行, 使不得見者數月。丁酉獨對時, 上意蓋在於延齡云。至是, 以疾不起, 上違豫中傷悼不自堪, 欲强起親臨喪次。藥院至誠挽之而不得。成服後駕幸哭之, 流涕滿面, 群下不忍仰視。

그 사실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당시 肅宗이 세자 아닌 다른 왕자들에게 애정을 쏟는 것이 신료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肅宗의 병세가 위중해져서 왕위계승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을 즈음, 왕실의 여성으로서는 仁元王后(1687~1757)가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다.[54] 仁元王后는 慶恩府院君 金柱臣(1661~1721)의 딸로, 肅宗 28년(壬午, 1702) 10월 12살의 나이에 왕비로 책봉되었다.[55] 이는 肅宗이 복위시킨 仁顯王后의 죽음에 대한 禧嬪의 죄를 물어 自盡하게 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시점이었는데,[56] 비록 입궁 시기나 나이로만 본다면 淑嬪(1670~1718)이나 寧嬪(1669~1735)에 비해서도 아래였지만 肅宗의 正室 繼妃로서 그녀의 지위는 후궁들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게다가 당시는 肅宗이 禧嬪의 경우를 본보기 삼아 다시는 후궁이 중전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못을 박아놓은 상태였으므로, 그녀의 지위는 확고하였다.[57]

仁元王后는 끝내 왕자는커녕 한 명의 자식도 낳지 못했으나, 모든 후궁 소생 왕자들의 법적인 어머니(母后)로서 당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肅宗이 승하하게 되면 大妃로서 왕위계승을 비롯한 제반 사항들에 있어 막강한 정치적 발언권을 갖게 되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렇듯 先王의 遺訓을 대변하는 자로서 大妃의 발언권은 때로 왕의 그것을 넘어서기도 하였다. 그녀의 집안은 西人 가운데 少論系에 가까웠으나, 선명한 黨色을 띄고 있지는 않았던 듯하다.[58] 그러나 그녀가 책봉되던 시기와 그 이후의 정세를 놓고 미루어 봤을 때 그녀는 禧嬪을 옹호하기보다는 처분하는 측의 의리를 지지할 가능성이 컸다.

이상의 내용은 少論系 黨論書인 『黨議通略』에도 등장하는데, 이를 보면 肅宗이 延齡君을 총애한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黨議通略』, 62쪽

… 時延齡君序居第二, 方爲上所眷。延礽君序居第三, 令聞日著。老論不知所擇, 或相與異同。未幾延齡卒, 始專屬心於延礽君, 而省行、福澤, 至私謁藩邸矣。事詳下文。…

54) 본고에서는 肅宗이 말년에 왕위계승을 두고 고민한 시기를 肅宗 在位 31년(乙酉, 1705)부터 46년(庚子, 1720) 임종하기까지의 기간으로 상정하였다. 대리청정의 명령은 肅宗의 병세가 위독해진 丁酉年(1717)에 내려졌다.

55) 『肅宗實錄』 37卷, 28年 壬午(1702) 10月 3日 기사.

56) 禧嬪 張氏는 1701年 10月 10日에 처결되었다.

『肅宗實錄』 35卷, 27年 辛巳(1701) 10月 10日 기사.

57) 『肅宗實錄』 35卷, 27年 辛巳(1701) 10月 7日 기사.

58) 『黨議通略』, 京城朝鮮光文會(1912) 63p

… 方是時仁元后在東朝。慶恩府院君金柱臣, 本少論而意嘗向老論。上國舅咸原府院君魚有龜, 本老論而老論不與共事。…

淑嬪 崔氏(1670~1718)는 당시 지위에 위협을 받고 있던 세자를 제외한 第一王子의 생모였으며, 후궁으로서는 가장 높은 품계인 正一品 嬪이었다. 그녀의 본관은 海州로, 副司果 崔孝原(1638~1672)의 딸로 태어나 7세 때 궁에 여종으로 들어갔다가 肅宗의 승은을 입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淑嬪 張氏의 賜死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정치적인 면모와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그 이후의 기록에서는 오히려 찾아보기 어렵다. 淑嬪은 肅宗 42년(丙申, 1716) 병이 들어 延礽君 私第로 나와 아들과 함께 지내다가 肅宗 44년(戊戌, 1718) 사망하였다.[59]

寧嬪 金氏(1669~1735)는 金昌國(1644~1717)의 딸로, 본관은 安東이다. 高祖가 斥和大臣 金尙憲으로, 노론 명문가의 후손으로서 肅宗 12년(丙寅, 1686) 정식 간택을 거쳐 후궁이 되었다.[60] 그녀는 출신 자체가 다른 후궁과는 달라서 入宮한 지 얼마 되지 않아 貴人의 지위까지 올랐으나, 肅宗의 총애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61] 實錄에서는 그녀가 같은 노론계인 明聖大妃와 仁顯王后의 지지 속에서 禧嬪 張氏를 견제하기 위해 간택된 것으로 묘사하였는데, 과연 그녀는 仁顯王后의 운명과 浮沈을 같이하였다. 그녀는 仁顯王后가 폐위되고 서인 세력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闕內의 動靜을 외부에 전한다는 죄목으로 폐출되었다가[62] 仁顯王后가 복위되면서 예전의 지위를 회복하였고,[63] 肅宗 28년(壬午, 1702) 仁元王后가 책봉되면서 寧嬪으로 승급되었다.[64] 寧嬪의 지위 변화는 肅宗代의 왕실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라고

---

59)『肅宗實錄』61卷, 44年 戊戌(1718) 3月 9日 기사.
장서각,『숙빈최씨 자료집』1~4(2009);『영조대왕』(2011);『영조대왕자료집』1~4(2012) 참조.

60)『肅宗實錄』17卷, 12年 丙寅(1686) 3月 28日 기사.

61)『肅宗實錄』17卷, 12年 丙寅(1686) 12月 10日 기사
○命封張氏爲淑媛,… (中略) …內殿憂其難制, 勸上**別選後宮金昌國之女, 被選入宮, 而亦無寵,** 未幾, 遂封張氏爲淑媛…

62)『肅宗實錄』20卷, 15年 己巳(1689) 4月 21日 기사
…上曰: "致祥、壽恒, 相與交通, 伺上動靜, 諺云: '孤掌不鳴。' 此豈致祥所獨爲之事乎? 一日賓廳引見時, 親錄筵中說話於小紙, 置之座側, 俄失之, 蓋貴人適奉巾櫛, 藏在袖中, 窮搜之後, 始乃不得已還納, 問其故則曰: '錯認爲閑漫休紙。' 此非一時偶然之事。 飛語造謗, 蓋不止於致祥也。 國家將生大患, 此予所憂, 耆晩何敢混爲救解乎? 李允修之言是也。" …(中略)…遂下傳旨曰: "**貴人金氏, 與壽恒內外交通, 伺上動靜, 宮闈之事, 無不宣洩, 且締結主家, 飛語造謗, 無所不至, 不可無處置之道。**" …
『肅宗實錄』20卷, 15年 己巳(1689) 4月 22日 기사
○禮曹言: "貴人金氏, 旣命考例處之。 中宗朝後宮朴氏, 挾妖術謀危東宮, 事覺竄殛, 此可爲例, 但罪名不同, 須稟上旨。" 上命削其爵號, 燒其敎旨而廢黜之, 遂歸其第。

63)『肅宗實錄』26卷, 20年 甲戌(1694) 4月 12日 기사.

64)『肅宗實錄』37卷, 28年 壬午(1702) 10月 18日 기사.

할 수 있는데, 소생이 없는 대신 延礽君을 친자식처럼 보살폈으며 延礽君도 그녀를 어머니로 부르며 잘 따랐다고 한다.[65]

肅宗의 병세가 위중해짐에 따라 왕위계승의 문제가 부상할 즈음, 왕실 내에서 세자의 입지는 매우 좁아져 있었다. 세자는 후궁의 아들로 태어나 일찌감치 세자에 책봉되었지만 생모가 사사된 이후 肅宗의 보호 하에 간신히 세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肅宗의 총애는 오히려 다른 왕자들에게 기울어 있는 상황이었다. 후손이 절박했던 당시 왕실 상황에서 세자는 후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의심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肅宗 사후 왕위계승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될 大妃를 비롯하여 왕실 여성들조차 세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다.

2. 노론 주도 정국과 왕세자

肅宗代의 官僚集團은 대부분 血緣과 師承관계로 맺어진 朋黨에 속해 있었다. 당시의 朋黨은 조선사회에 등장한 이후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끈끈한 학문 · 정치 結社로 기능하였는데, 肅宗代의 정국은 특히 잦은 換局으로 朋黨 간의 浮沈이 극명하게 나뉘던 시기였다. 관료집단을 구성하는 세력의 교체가 왕실 내부의 문제, 특히 왕위 계승과 妃嬪 문제에 관한 黨派간의 입장 차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은 이 시기 정국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로, 肅宗은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세력을 축출하고 정국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肅宗의 정국 운영은 새로 정국을 주도하게 되는 집단에게 관직 뿐 아니라 黨派간의 묵은 원한을 해소하는 기회도 함께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 반복되는 換局 과정에서 이어진 忠逆是非로 朋黨 간에 갈등의 골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었고, 상대 당파에 대한 공격도 점점 격렬해져 갔다.

---

65) 『英祖實錄』 40卷, 11年 乙卯(1735) 1月 12日 기사
○癸未/肅廟後宮寧嬪金氏卒。 金氏都正昌國女也。 選入後宮, 肅廟禮待, 異於他嬪御, 上亦尊禮之, 至是卒。 上曰: “先朝後宮, 只餘一人。 曾與仁顯聖母同値己巳, 而甲戌復位時亦復爵矣。 予幼時常母稱之, 今聞其喪, 不勝感懷。 禮葬依安嬪例。” 旣而, 更命用禩嬪例。

肅宗代의 官僚集團은 크게 西人 老論과 少論, 그리고 南人으로 나뉘었다. 肅宗代의 정국을 관료집단의 구성 변화에 따라 크게 전후 두 시기로 나눈다면 肅宗 20년(1694, 甲戌)의 甲戌換局을 기준으로 南人과 西人이 교체하던 전반기와 南人 몰락 이후 西人 가운데 老論과 少論이 대립하던 후반기로 나눌 수 있다.

肅宗 즉위년(甲寅, 1674)의 禮訟에서 승리한 南人이 주도하던 肅宗 즉위 초반의 정국은 肅宗 6년(庚申, 1680)에 발생한 역모사건을 계기로 西人으로 교체되었다(庚申換局). 西人 老論이 정국을 주도하게 된 상황에서 肅宗은 仁敬王后 사후 새로 간택된 老論 명문가 출신 왕비 閔氏보다 후궁 張氏를 총애하였는데, 肅宗 14년(戊辰, 1688) 그녀가 왕자를 생산하자 肅宗은 왕자를 서둘러 세자로 책봉하는 한편 현 왕비를 폐출시키고 후궁 張氏를 왕비로 책봉하고자 하였다. 肅宗은 자신의 결정에 반발하는 西人들을 축출하고 정국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南人들을 정치적 동반자로 선택하였는데, 南人들은 이 기회에 지난 庚申換局 때의 억울함을 풀고 西人에게 복수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왕자의 元子 定號와 仁顯王后 폐위에 반대했던 西人系 인사들이 대거 숙청당하고 南人이 집권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肅宗 15년(己巳, 1689)의 일이었다(己巳換局).

己巳換局을 계기로 南人은 새로 中殿이 된 세자의 어머니 張氏와 세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66] 정치적으로 공동 운명체가 된 것이다. 그러나 肅宗은 5년 뒤인 肅宗 20년(甲戌, 1694) 仁顯王后 復位를 기도한 혐의로 잡혀온 일부 老論 인사들을 鞫問하는 과정에서 南人 大臣들의 태도에 환멸을 느끼고 하루아침에 更張을 단행하였다(甲戌換局).[67] 官僚集團을 南人에서 일시에 西人 세력으로 교체한 것인데, 이어서 仁顯王后의 복위를 명하고 張氏를 다시 禧嬪으로 강등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한편 己巳換局 당시의 처분들을 취소하였다.[68] 이로 인해 己巳換局 때 처벌을 받았던 西人官僚들은 대부분 復權되었고, 반면 南人 세력은 이를 계기로 몰락하여 정권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되었다. 이러

---

66) 禧嬪 張氏가 원래 南人과 친분이 있는 中人 譯官 집안 출신이었으므로 당시 정계에서 소외되었던 中人과 南人 세력이 그녀를 후원하여 肅宗에게 접근하도록 하였다는 설명도 가능하나, 공동운명체로서 禧嬪과 南人이 본격적으로 결탁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己巳換局이었다. 『肅宗實錄』 17卷, 12年 丙寅(1686) 12月 10日 기사 참조.

67) 『肅宗實錄』 26卷, 20年 甲戌(1694) 4月 1日~2日 기사.

68) 『肅宗實錄』 26卷, 20年 甲戌(1694) 4月 12日 기사.
『肅宗實錄』 26卷, 20年 甲戌(1694) 閏 5月 29日 기사.

한 와중에 肅宗은 세자의 보호를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썼지만, 세자와 禧嬪의 입지는 더불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甲戌換局 이후 정국의 주도권은 西人 가운데서도 南人과 禧嬪의 처우에 비교적 관대했던 少論이 주도하였다. 少論은 禧嬪이 세자의 생모일 뿐 아니라 그녀 또한 6년 동안이나 中殿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특별히 예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世子와 禧嬪의 보호자를 자처하였다.[69] 老論 측에서는 少論의 이러한 태도를 두고 훗날을 바라고 禧嬪과 世子에게 아부하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肅宗 27년(辛巳, 1701) 仁顯王后가 怪疾로 승하한 뒤 肅宗은 禧嬪이 평소 仁顯王后를 능멸하였을 뿐 아니라 왕비를 해치기 위해 궁중에서 邪術을 행하여 왕후를 저주하고 괴롭힌 사실을 알게 되었다.[70] 肅宗은 분노하여 禧嬪을 自盡하게 하도록 명하였는데, 肅宗이 이러한 조치를 내리게 된 데에는 세자의 생모로서 禧嬪이 세자의 앞날과 이후의 정국에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을 우려한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71]

禧嬪의 賜死이후 少論과 老論은 상호간에 치열하게 대립하였으나 정국의 주도권은 점차 老論에게로 기울어져 갔다. 肅宗 36년(庚寅, 1710) 肅宗의 신임을 받으며 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少論大臣 崔錫鼎(1646~1715)이 領議政의

---

69) 『肅宗實錄』 26卷, 20年 甲戌(1694) 4月 17日 기사.
이에 대해 이영춘, 『조선후기 왕위계승 연구(1998)』, 290-291쪽에서는 甲戌換局을 老論이 주도하였음에도 그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少論이 가져가게 된 배경에 대해 老論들이 대부분 己巳換局 당시 罪名을 받은 처지였기 때문에 출사하기에 떳떳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甲戌換局이 金春澤 등 老論 年少輩들의 떳떳하지 못한 음모로 성사되었기 때문에 老論을 중용하는 데 명분상의 문제가 있어 당시 淸流를 자처하며 명분을 중시하던 少論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實錄의 기록을 토대로 보면 己巳年 被禍者 들의 復權이 곧바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金春澤 등에 대한 肅宗의 기본적인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그의 주장과 상반되는 부분이다. 필자는 이보다는 肅宗이 甲戌換局을 단행하게 된 계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극심해지는 朋黨間 살육전에 염증을 느낀 肅宗이 老論과 南人, 仁顯王后와 禧嬪 사이에서 비교적 중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少論을 정치적 동반자로 선택하였다는 해설이 비교적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己巳換局 당시의 피해로 막심한 타격을 입었던 老論 자제들이 父兄의 죽음을 뒤로 한 채 肅宗의 부름에 선뜻 출사할 수 있었는가라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70) 『肅宗實錄』 17卷, 12年 丙寅(1686) 12月 10日 기사.
『肅宗實錄』 35卷, 27年 辛巳(1701) 10月 8日 기사.

71) 『肅宗實錄』 35卷, 27年 辛巳(1701) 9月 25日 기사.
○夜, 下備忘記曰: 古者漢之武帝殺鉤弋夫人, 斷則斷矣, 而猶有所未盡善者。 如使張氏知命不猶, 則明『春秋』之大義, 著爲令甲, 足以防閑。 何必如鉤弋之爲哉? 此則不然。 罪已彰著, **若不善處, 則他日之慮, 有難形喩, 實出於爲國家也爲世子也。 張氏使之自盡。**

자리에서 파직되면서 이후의 정국은 거의 老論이 주도하게 되었다.[72] 肅宗의 건강이 악화되어 대리청정의 명령을 내리기 직전에 해당하는 肅宗 42년(丙申, 1716), 肅宗은 老論과 少論의 오래된 논쟁거리였던 宋時烈(1607~1689)과 尹拯(1629~1714) 사이의 懷尼是非에 대해 老論측의 尹拯背師論에 동의하는[73] 한편 尹拯에 대한 先正의 칭호를 금함으로써[74] 老論의 義理를 시대정의로 인정하였다(丙申處分). 이 丙申處分은 거듭되는 換局 끝에 老論이 최종적으로 肅宗의 국정 동반자로 선택되었음을 선언하는 사건이었다.

肅宗이 세자에게 禪位를 하려고 결심하였던 肅宗 31년(乙酉, 1705)[75]부터 대리청정의 시행을 명령하고(肅宗 43년 丁酉, 1717)[76] 肅宗이 승하하기까지(肅宗 46년 庚子, 1720)[77]의 시기는 少論이 退潮하고 老論이 주도하는 정국이었다. 대리청정의 명령이 내려질 당시는 丙申處分 이후 이미 老論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상황이었으며, 少論系 인사들이 아직 官界 곳곳에 포진해 있기는 하였지만 거물급의 인사들은 중앙 정계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肅宗이 世子의 대리청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老論系 대신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肅宗代 대리청정의 결정과 시행 과정에서 주목할만한 老論系 인사로는 判府事 李濡(1645~1721) · 領議政 金昌集(1648~1722) · 左議政 李頤命(1658~1722) · 禮曹判書 閔鎭厚(1659~1720)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時 · 原任大臣으로서 肅宗이 왕위계승에 관해 고민할 때 신료 가운데 가장 近密한 곳에서 肅宗과 논의하였다. 당시 金昌集은 藥房 都提調를, 閔鎭厚는 藥房 提調를 겸하면서 病席에 있던 肅宗을 가장 자주 面對할 수 있었으며, 李頤命의 경우 세자의 대리청정

---

72) 『肅宗實錄』 48卷, 36年 庚寅(1710) 3月 12日 기사.
李建昌, 『黨議通略』, 京城朝鮮光文會本(1912) 58쪽
初上於輔相中最重南九萬, 引錫鼎同升, 錫鼎前後九拜領相, 雖間有譴罷, 旋卽依用. 以此少論當主國政者二十餘年. 至庚寅, 上忽責崔錫鼎, 提擧藥院侍疾不勤, 黜之. 三司疏救者幷削黜, 悉用老論. 人莫測其所由. 時南九萬已卒, 錫鼎尋亦卒. 老論專用事, 自此始.

73) 『肅宗實錄』 58卷, 42年 丙申(1716) 7月 10日 기사.

74) 丙申處分이 있고 나서 이듬해에는 尹宣擧와 尹拯 父子의 官爵을 追奪하였다.
『肅宗實錄』 58卷, 42年 丙申(1716) 12月 29日 기사.
『肅宗實錄』 58卷, 43年 丁酉(1717) 5月 29日 기사.

75) 『肅宗實錄』42卷, 31年 乙酉(1705) 10月 29日 기사.

76) 『肅宗實錄』60卷, 43年 丁酉(1717) 7月 19日 기사.

77) 『肅宗實錄』65卷, 46年 庚子(1720) 6月 8日 기사.

문제를 두고 肅宗과 獨對를 하는(丁酉獨對)[78] 등 肅宗으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己巳換局 당시의 被禍者 가족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金昌集의 아버지 金壽恒(1629~1689)과 李頤命의 형 李師命(1647~1689)은 모두 己巳換局 당시 죽음을 당했으며, 閔鎭厚는 仁顯王后의 동복 오빠였다.

대리청정과 관련하여 少論系 인사들의 입장을 대변한 대표적인 인사로는 領府事 尹趾完(1635~1718)이 있다. 그는 당시 原任大臣으로서 대리청정의 명이 내려지자 上京하여 상소하였다.[79] 尹趾完은 甲戌換局 직후 御營大將 · 右議政 등을 지냈던 老大臣이었으나 당시 논의가 제기된 후 대리청정의 시행을 결정한 肅宗의 備忘記가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이 불과 하루 안에 이루어질 정도로 급속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의 상소는 肅宗의 譴責을 받고 묵살되었다. 당시 요직에서 밀려나 있던 少論系 인사들의 의견은 적절한 시기에 제시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肅宗이 고민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논의과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肅宗의 政局 운영방식은 朋黨간의 갈등을 격화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 과정에서 세자와 세자 생모의 문제를 두고 黨人들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그러나 肅宗 27년(辛巳, 1701) 이후 정국은 世子保護論을 주장하며 세자의 생모를 옹호하였던 少論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肅宗 42년(丙申, 1716)을 계기로 정국은 老論이 주도하게 되었다. 세자의 생모에 대한 양당간의 견해 차이는 그대로 서로에 대한 忠逆是非로 이어졌는데, 당시 집권 老論 측은 세자를 謀害한다는 혐의로 공격을 받고 있었다. 정국의 흐름은 세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었으나, 老論 입장에서도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의 정세는 만에 하나 세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온전히 老論의 탓이 되는 형국이었다.[80]

---

78) 『肅宗實錄』 60卷, 43年 丁酉(1717) 7月 19日 기사.
『丹巖漫錄』, 장서각 소장본(K3 0613 v.1) 58b-59a.
『黨議通略』, 京城朝鮮光文會(1912), 62쪽.

79) 『肅宗實錄』 60卷, 43年 丁酉(1717) 7月 28日 기사.

80) 노론측에서는 자신들이 세자 교체를 획책한다는 의심을 소론들로부터 받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다.
『丹巖漫錄』 v.2, 1b

二. 숙종대 대리청정 논의의 전개양상

1. 세자교체설과 왕세자 대리청정

肅宗은 이미 在位 31년(乙酉, 1705)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세자에게 禪位하고자 하였다가 주위의 만류로 3일 만에 명령을 환수한 바 있다. 당시 신료들은 肅宗의 病勢가 점점 나아지고 있고 나이도 아직 젊다는 것을 반대의 주요한 근거로 삼았다. 禪位에 관한 備忘記의 내용이 알려지자 고위 대신들과 세자 뿐 아니라 각지의 地方官과 武官 · 儒生들에 이르기까지 연명으로 상소하여 禪位의 불가함을 피력하였다.[81] 세자와 신료들의 이러한 반응은 기존의 관습상 필연적인 행동이었고, 이를 예측하기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이 당시 肅宗의 禪位 선언을 단순히 人心의 向背를 저울질해보고자 하는 讓位波動의 성격으로 파악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다. 肅宗은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고민하고 있었으며,[82] 전후의 기록들을 살펴보았을 때 肅宗의 병세가 예사롭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肅宗 31년(乙酉, 1705) 世子에게 양위하겠다던 肅宗의 태도는 12년이 지난 뒤인 肅宗 43년(丁酉, 1717)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돌변한다.

> …“나의 눈병이 여러 해 쌓이면서 고질병이 되었다. 옛날의 제왕들이 이미 했던 일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지난 乙酉年(肅宗 32, 1705)에는 내 傳禪하는 일을 하려 했었는데, 지금은 행동에 옮기려 해도 반드시 곤란하게 될 단

…自聖侯危卹之後, 少論輩做出兇言, 以爲老論必將廢儲嗣, 而立王子. 見諸宰逐日會於闕中憂念上疾, 或聚首細語, 則輒指曰是謀廢立也.…

81) 肅宗의 禪位 불가를 피력한 京鄕의 상소에 대한 내용은 『承政院日記』와 『肅宗實錄』의 肅宗 31年 乙酉(1705) 10月 29日~31日 기사를 참조.

82) 『肅宗實錄』42卷, 31年 乙酉(1705) 10月 29日 기사

○己未/藥房問安, 仍請入診, 答曰: “勿爲入診。 噫! 火與元氣, 本不兩立。 予之火症, 向衰益痼, 五六年間, 頓覺肌膚日就消鑠, 其勢必漸至焦枯也。 噫! 凡人死生所關, 孰無顧惜之心? 昨年藥院之批, 寫盡切迫之狀, 知我者謂我深憂, 不知我者, 謂我倦怠。 此非些少文書之省減所可得力, 亦非區區陳根腐草所可責效也。 若不遵依祖宗朝古事, 居閑調養, 則實有難言之憂。 予之有此志, 固已久矣, 至於今日, 益決矣。”

서가 있다. 이제는 눈이 멀게 생겼는데, 나랏일이 매우 안타깝다. (唐太宗이) 太子에게 詔勅하여 聽政하게 한 것처럼 할 수만 있었다면 눈병이 심해지기 전에 내가 어찌 행하려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지금은 행할 수가 없다. 내 한 몸도 진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國事는 더욱 아득하기만 하다."…[83]

위 인용문에서 肅宗은 世子에게 聽政을 시킬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난날에는 세자에게 禪位라도 하려고 하였지만 그 사이에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생겨 이제는 聽政을 시킬 수 없다는 모호한 발언을 하고 있다. 다시금 이전의 讓位 선언이 진심에서 나온 행동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肅宗 31년(乙酉, 1705)에서 43년(丁酉, 1717) 사이에 세자에 대한 肅宗의 시각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외부적인 조건을 놓고 본다면 肅宗 43년의 상황은 이전에 비해 세자에게 禪位하거나 聽政을 맡기기에 오히려 유리해진 측면이 많았다. 첫째, 肅宗의 병세가 심각해서 국정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대해 이전과 같이 이의를 제기하는 신료들이 없었다. 둘째, 이전에는 肅宗의 나이도 45세였지만 이제 57세가 되었고, 세자의 나이도 18세에서 30세가 되었다. 肅宗은 더 이상 젊다고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고, 世子는 어리다고 할 수 없는 나이가 된 것이다. 게다가 祖宗朝의 故事를 중시하던 당시의 문화 속에서 太宗이 禪位할 당시의 나이가 52세였고 아들인 世宗이 22세였다는 점은 禪位나 聽政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매우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肅宗은 세자에게 聽政을 시키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肅宗이 무슨 이유로 당시 세자의 聽政이 불가하다고 하였는지는 실록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聽政을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지고

---

83) 『肅宗實錄』 60卷, 43年 丁酉(1717) 7月 19日 기사
…上曰: "左相入侍時, 已悉予意矣。 **予之眼患, 積年沈痼。 古昔帝王已行事, 予非不知也。 往在乙酉, 傳禪之事, 予欲行之, 而今則雖欲行之, 有必難之端。 今將廢明, 國事切悶。 詔太子聽政之事, 如可行之, 則眼患未甚之前, 予豈不欲行之, 而今則不可行之。 一身固爲切悶, 而國事尤極罔涯矣。** " 昌集曰: "王世子仁孝素著, 英明過人, 聽政之事, 豈有不可行之理乎? 自上斷然行之何如?" 上曰: "詔太子聽政, 予非不欲行之, 而事有不如意者。 此予所以欲之, 而不能行者也。"…

나서 이틀이 지난 후인 7월 21일 玉堂에서 올린 箚子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

> "어제 筵席에서 여러 대신들의 開陳으로 인하여 聖上께서 특별히 깊이 헤아려 생각하신 끝에 왕세자에게 聽政하게 한다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調攝에도 보탬이 있을 것이고 사무가 지체되는 일도 없을 것이니, 宗社의 경사와 臣民의 행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筵席은 엄중하고 비밀스러운 곳이므로 당일의 說話를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聖上께서 酬酢하실 때 더러 未安한 下敎가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하건대 우리 왕세자는 春宮으로 덕을 길러 온 지가 30년인데, 睿學을 일찍 성취하였고 어질다는 소문이 멀리 전파되었으므로 온 나라 사람들이 목을 길게 빼고 愛戴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 이러한 하교를 하셨던 것은 다만 지극한 사랑으로 이미 훌륭한데도 더 훌륭하기를 바라고 이미 착한데도 더 착하기를 타이른 것일 뿐이니, 안팎의 臣庶가 누군들 전하께서 뜻하시는 바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말이 혹시 잘못 전파된다면 듣는 이들이 쉽게 현혹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부탁의 지중함을 길이 유념하시고 辭旨의 경솔함을 깊이 뉘우치시어 그날 **筵席의 하교 가운데 春宮에게 관계된 것은 모두 還收해서 日記에 기록되어 원근에 전파되는 일이 없게 한다면, 群情이 편안하고 국가가 길이 힘입게 될 것입니다.**" 84)

위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는 肅宗이 세자에게 聽政을 맡기지 못한 이유에 대해 筵席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

84)『肅宗實錄』60卷, 43年 丁酉(1717) 7月 21日 기사
○癸酉/副提學李宜顯、應敎魚有龜、副應敎尹鳳朝、校理洪啓迪, 副校理金在魯上箚曰:
日昨筵中, 因諸大臣開陳, 聖念特加商量, 乃有王世子聽政之命。 從今以往, 可以有益於調攝, 無滯於事務, 宗社之慶, 臣民之幸, 有不可勝言。 筵席嚴秘, 伊日說話, 雖不得其詳, 而第聞聖上酬酢之際, **多有未安之敎云**。 念我王世子, 養德春宮, 三十年所, 睿學夙就, 仁聲遠聞, 擧國延頸, 莫不愛戴, 而殿下之有此敎者, 特以止慈無窮之情, 旣聖而猶望其益聖, 旣善而猶責其益善, 則中外臣庶, 孰不仰曉聖意所在, 而語言或致翻傳, 聽聞易以眩惑。 伏願永念付托之至重, 深悔辭旨之輕遽, **伊日筵敎之有涉於春宮者, 竝爲收還, 毋致載錄於日記, 傳播於遠邇, 則群情得安, 國家永賴矣。**
上答曰:"勿載日錄事, 卿等之言如此, 從之。"

다. 세자에 관한 肅宗의 언급은 고의적으로 삭제되었으며, 실제로 당일의 기록에 있어서 實錄의 기록보다도 오히려 『承政院日記』의 기록이 더 소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는 세자에 관련한 肅宗의 언급이 세자를 책망하는 내용이었으며, 신료로서 듣기 거북한 언사였다는 점이다. 상소에서는 이를 두고 '未安之敎'로 표현하고 있는데, '大段未安之敎'[85] ·'筵對未安之敎'[86]·'差失之敎'[87] 등 유사한 표현들이 잇따른 이후의 상소들에서도 보인다.

장차 정국과 세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日記에서 삭제하였으므로 당시 肅宗이 내린 하교 가운데 세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實錄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삭제되고 기록되지 않은 부분은 당시 肅宗이 세자에게 聽政을 시키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 나아가서는 세자에 대한 肅宗의 인식을 반영한 부분일 것이다. 다행히 『承政院日記』와 달리 『肅宗實錄』에서는 肅宗과 大臣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둔 상태에서 肅宗의 下敎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筵席에서 있었던 아래 대화의 맥락을 살펴보면 肅宗의 발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肅宗 : "唐太宗이 태자에게 명령하여 聽政하게 하였던 일을 내가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이 여의치 못한 점이 있다. 이것이 내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이유인 것이다."

李頤命 : "入診했을 때 신이 아뢴 바가 있었는데, 재차 筵席에 올라 또 下敎를 받들었으므로 지금은 다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신 등은 밖에 있으면서 세자에게 失德한 일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仁顯王后께서 復位되셨을 때에는 효도를 다하고 昇遐하셨을 적에는 슬픔을 극진히 하였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德器가 이미 완성되어 仁孝가 더욱 드러났다고 하니, 어찌 聽政을 감당하지 못할(不堪聽政)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聖敎는 실로 천만 뜻밖입니다. 예로부터 국가가 어지럽고 망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85) 『肅宗實錄』 60卷, 43年 丁酉(1717) 7月 23日, 執義 權熀의 上疏.
86) 『肅宗實錄』 60卷, 43年 丁酉(1717) 7月 24日, 都承旨 李觀命 · 右承旨 李德英 · 左副承旨 李箕翊 等의 聯名上疏.
87) 『肅宗實錄』 60卷, 43年 丁酉(1717) 7月 28日, 領中樞府事 尹趾完의 上疏.

일을 처치함에 마땅함을 잃는 것으로부터 연유되었습니다. 세자에게 庶務를 參決하도록 하시고 신 등이 각자 정성을 다하여 보좌한다면 나랏일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을 리 있겠습니까? 聖明께서 이제 惕然히 意圖를 고치시어 다시 의심을 가지지 않으신다면 이것이 어찌 宗社의 복록이 아니겠습니까?"

金昌集 : "일찍이 세자에게 仁孝의 덕이 있다고 들었는데, 신 등이 書筵에 入侍한 적이 있으므로 또한 그 德性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찌 聽政을 감당하지 못할(不堪聽政) 이치가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거듭 생각하시어 세자더러 곁에서 國事를 參決하면서 聖躬을 보호하고 국가를 이롭게 하도록 하소서."

李頤命 : "閭巷 사람의 경우로 말하자면 어떤 일이라도 점차 익힌다면 자연히 진취가 있게 됩니다. 세자의 英明한 자질로 어찌 聽政하지 못할(不能聽政) 이치가 있겠습니까? 성상께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은 국가의 복이 아닙니다."[88]

이상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肅宗의 발언 뒤에 李頤命·金昌集의 발언이 이어지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세자와 관련된 肅宗의 발언이 수정, 혹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 이어지는 李頤命과 金昌集의 발언이 모두 肅宗에게 세자가 聽政을 감당하지 못할 것(不堪聽政·不能聽政)이라는 의심을 버리라는 취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89]

---

88) 『肅宗實錄』 43年 60卷, 丁酉(1717) 7月 19日 기사
…上曰: "詔太子聽政, 予非不欲行之, 而事有不如意者。 此予所以欲之, 而不能行者也。" 頤命曰: "入診時, 臣有所達, 再次登筵, 又承下敎, 今則更無所達, 而臣等在外, 未嘗聞春宮有失德之事。 且聞盡孝盡哀於仁顯王后壺御禮陟之日, 至于今日, 德器已成, 仁孝益彰, 寧有不堪聽政之慮, 而今此聖敎, 實是萬萬意外。 自古國家亂亡, 皆由於此等處置之失宜。 若使春宮, 參決庶務, 臣等各自盡誠協輔, 則國事安有不可爲之理? 聖明今若惕然改圖, 勿復持疑, 則此豈非宗社之福乎?" 昌集曰: "曾聞春宮仁孝之德, 臣等入侍胄筵, 亦嘗習知德性矣。 豈有不堪聽政之理乎? 伏乞更加三思, 使之在傍參決, 以之保聖躬而利國家。" 頤命曰: "以閭巷人言之, 凡事漸次習之, 則自然進就矣。 以春宮英明之姿, 寧有不能聽政之理乎? 聖慮如此, 此非國家之福也。" …

89) 肅宗의 발언에 대한 필자의 추측은 『丹巖漫錄』의 내용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丹巖漫錄』은 閔鎭遠(1664~1736)이 英祖 4년(戊申, 1728)에 기록한 것으로, 그는 당시 세자대리청정의 논의와 시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閔鎭厚의 아우이다. 『丹巖漫錄』에서는 당시 肅宗과 李頤命의 獨對에 관하여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데(『丹巖漫錄』, 장서각 소장본(K3 0613 v.1) 58a-60b.), 肅宗이 연석에서 언급한 내용을 '決不可堪荷, 予久有此意'의 10字로

세자의 국정 처리 능력을 의심하는 肅宗의 발언은 당시 장성한 다른 왕자들에 대한 총애와 아울러 신료들에게 肅宗이 세자 교체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大臣들은 筵席에서 '국가가 어지러워지고 망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일을 처치함에 마땅함을 잃는 것으로부터 연유되었습니다'라든지, '전하께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은 국가의 복이 아닙니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다. 게다가 같은 자리에서 肅宗이 "내 뜻은 聽政을 시키는 것을 어렵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90] 肅宗의 의도가 세자를 교체하는 데 있었다는 추측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는 부분이다. 實錄은 이에 大臣들이 놀라 다시 무엇을 어렵게 여기는 것이냐고 묻자 肅宗이 침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肅宗이 자신의 본심을 입 밖에 내었는데 후에 삭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肅宗이 세자의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實錄 외의 黨論書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丹巖漫錄』에서는 肅宗이 세자를 폐하고자 하는 의도를 李頤命과 獨對한 자리에서 노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91] 『黨議通略』에서도 당시 세자를 교체하려는 것이 肅宗의 의도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92] 당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丹巖漫錄』v.1, 59b.

…於是原任大臣李濡、領相金昌集、右相李頤命又入侍. 上又發'決不可堪荷予久有此意'之敎.

90) 『肅宗實錄』43年 60卷, 丁酉(1717) 7月 19日 기사

…濡曰: "春宮春秋, 今已盛壯, 德性加進於前, 聽政之事, 固宜行之。 自上有何持難之端乎?" 上曰: "予意不以聽政爲難矣。" 濡曰: "聖意如不以聽政爲難, 則未知所難者何事?" 上不答。…

91) 『丹巖漫錄』에는 肅宗이 李頤命에게 세자의 문제점으로 주의력 결핍과 불손한 행동 등을 언급하였을 뿐 아니라, 淸에서 세자를 폐한 사례까지 대화 가운데 오고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丹巖漫錄』v.1, 58a-59b

…又命右相入侍【時領相金昌集以藥院都提調病中在闕外】凡入侍時, 講筵外必承旨史官先入, 禮也. 頤命與承旨史官詣閤外, 則內侍曰 : "有命大臣先入." 入則, 承旨未及入, 而內侍遽閉門. 頤命進伏, 則上握手而歎曰 : "予死亡無日, 予死之後, 世子決不可堪荷, 奈何?" 頤命曰 : "殿下何爲出此言耶? 勿論古事, 卽今彼人事, 豈不可戒乎?"【時胡皇廢太子不更立】 上曰 : "予每言之矣, 今日太子世子, 何其相似耶?" 頤命曰 : "辛巳聖敎, 旣曰專爲世子地(也), 其後至欲禪位, 今忽如此, 何耶?" 上曰 : "其時則不如此. 欲禪之時, 亦勝於今矣. 衛瓘'尙有此座可惜'之言, 卿爲大臣, 何不爲國深慮, 而乃如是耶?" 頤命曰 : "世子仁柔, 事仁顯王后甚孝, 亦善於居憂. 無失德之聞於中外, 民皆仰戴. 設令處事有未盡者, 臣等亦可以輔導, 而納於善矣." 上曰 : "師傅賓客左右環坐, 而凡所講論之言, 專不留心, 或視屋瓦, 或顧他處, 卿等其何以輔導乎? 況向予亦有不遜之行, 無奈何矣. 予自病後, 久有此意矣. 今則眼病如此, 故【上疾諸證中眼患尤苦. 春間浴溫而無效, 仍不能視物】不得不發此言矣." 頤命曰 : "此何等大事, 而獨以命於臣耶? 臣則死不敢從. 竝招諸大臣而議之, 何如?" 上允之.…

시 세자가 대리청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肅宗의 의도라기보다는 이를 적극 만류한 관료집단, 그 중에서도 老論系 대신들의 의견이 관철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93] 肅宗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그날 筵席에서는 신료들이 국왕더러 세자에게 聽政을 시키라고 회유하고 협박하는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는데, 이로 인해 신료 가운데 왕세자의 參見을 처음 거론한 李頤命은 물론 당시 연석에서 세자의 청정을 주장했던 노론 대신들은 훗날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던 관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었다.[94]

대리청정의 시행을 논의할 당시, 肅宗의 병세는 이전보다 악화되었고 세자는 한결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肅宗은 國事를 담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자를 교체하고자 하였다. 肅宗은 세자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 세자의 지위를 확립하고 보호하는 데 힘써왔다. 심지어 禧嬪을 賜死할 때에도 세자의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95] 세자에 대해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오던 肅宗이 이렇듯 돌변한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黨議通略』은 少論이 정계에서 退陣하고 老論이 정국을 주도하게 되면서

---

92) 『黨議通略』, 京城朝鮮光文會(1912) 61p.
自崔錫鼎之罷相, 而無以保護言於上者. 上忽荐下嚴敎, 責世子過失, 中外惶惑莫測. 特召左相李頤命, 屛史官, 語秘不聞, 是謂丁酉獨對. 頤命出, 而命世子聽政, 且敎世子曰 : "近日處分, 事關斯文, 顧不重歟? 是非大定, 可以不惑於百世, 予志汝遵, 莫之或撓." 於是人多謂'上爲老論罪尹氏, 老論亦爲上謀易邸. 其贊聽政, 則將因是以傾之'云.
『黨議通略』에서는 老論이 聽政을 찬성한 것이 이를 빌미로 세자를 무너뜨리려는 의도였다고 보았다.

93) 『丹巖漫錄』은 대표적인 老論系 黨論書의 하나로, 老論의 입장에서 肅宗代에서 景宗代까지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그 객관성을 의심받아 왔다. 그러나 肅宗이 대리청정을 명하기 직전의 상황, 특히 李頤命의 獨對(丁酉獨對)를 서술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당시의 논의가 워낙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밖에 없다. 당시 日記와 實錄의 기록이 전후의 발언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부분이 있고, 丁酉獨對의 경우 당시의 대화내용을 사관들이 전혀 기록하지 못하였으니 이 부분은 『丹巖漫錄』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고간 대화의 내용이 생동감 있을 뿐 아니라 앞뒤의 정황과 부합하는 부분이 많다. 閔鎭遠은 獨對의 내용을 당사자(李頤命)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94) 논의의 특성상 당시 李頤命을 비롯한 노론 대신들의 의견은 세자의 전격적인 대리청정이라기보다는 參決에 가까웠는데, 이마저도 대리청정이 결정된 이후 일부 신료들의 비판을 받았다.
『肅宗實錄』60卷, 43年 丁酉(1717) 7月 19日 기사.
… 頤命曰: "下敎如此, 變通之道, 群下孰不極意思量, 而自下所可變通者, 不過減省文書。 以臣淺見, 凡入啓文書, 使音讀分明之人讀之, 而啓下或賜判付, 不可不命王世子在傍參見, 因以明習政務矣。" …

95) 『肅宗實錄』35卷, 27年 辛巳(1701) 10月 8日 기사.

肅宗에게 세자를 보호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사라진 것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96] 반면『丹巖漫錄』에서는 그 원인을 세자가 보이던 이상행동에서 찾았는데,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 세자의 병세를 묘사하였다. 『丹巖漫錄』에서 서술하고 있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언어장애, 혼잣말, 주의력 결핍, 분노 발작, 요실금, 성기능 장애, 나이에 안 맞는 장난, 불결한 용모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97]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경미한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y), 혹은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y)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자에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시기는 肅宗 30년(甲申, 1704)에서 31년(乙酉, 1705) 사이였다고 파악하였으며, 肅宗 27년(辛巳, 1701) 생모의 죽음 이후 肅宗이 세자를 심하게 꾸짖는 일이 잦아지면서 증세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았다.[98]『黨議通略』에서도 비록 시간상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肅宗이 10대의 세자를 심하게 꾸짖는 일이 잦았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99]

훗날의 일이지만 세자가 즉위한 뒤에 언급한 내용 중에서 세자가 진단한 자신의 건강상태, 병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음은 대리청정의 명령이 있고 나서 4년이 지난 시점의 기록으로, 세자가 왕위에 오른 뒤 자신의 질병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다.

> "내게 괴이한 병(奇疾)이 있어 십여 년 이래로 조금도 회복될 기약이 없으니, 바로 선왕께서 걱정하시던 것으로, 萬機를 酬應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지난 丁酉年(肅宗 43, 1717)에 聽政의 명이 있었던 것은 조용히 調攝하시는 중에 그 조섭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었으니, 내 몸에 이르러서는 달리 돌아

---

96)『黨議通略』, 京城朝鮮光文會(1912) 61쪽
… 自崔錫鼎之罷相, 而無以保護言於上者. 上忽荐下嚴敎, 責世子過失, 中外惶惑莫測.…

97)『丹巖漫錄』v.1, 58a-61a; v.2, 1a-2b 참조.

98)『丹巖漫錄』v.1, 44b
… 是後世子凡事少違於聖志, 則輒擧張氏之名而責之曰: "某之所生, 豈不然乎?" 必厲聲嚴責, 世子震怒罔措. 其後世子得奇疾, 終成國家之禍. 或以爲疾祟於驚恐云.…

99)『肅宗實錄』 46卷, 34年 戊子(1708) 1月 15日 기사에서도 신료들이 肅宗에게 세자를 타이를 때 聲色을 加하지 말고 조용히 타일러 보기를 권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볼 겨를이 없었다. 등극한 이래로는 밤낮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요즘은 증세가 더욱 심해서 痼疾이 되었고, 酬應도 어려워서 政事를 지체시킬 때가 많다."[100]

인용문의 내용을 보면 세자의 병세에 대해 肅宗이 염려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질병이 국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었다는 점이 확인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세자(景宗)가 이러한 자신의 病歷을 스스로 '十餘年'이라고 언급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계산해 보면 대리청정을 하기 5~6년 전 쯤에 해당하는데, 肅宗이 禪位하겠다는 명령을 還收한 뒤로는 5년 정도되는 시기이다. 禪位하겠다는 명령이 還收된 뒤 세자에게 전에 없던 '奇疾'이 생겼거나 혹은 악화된 사실을 보여주는 단서로, 앞서 다른 黨論書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도 거의 일치한다.

이전까지 보여준 肅宗의 정치적 성향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肅宗이 세자를 교체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肅宗은 주위의 말을 따라 世子의 聽政을 명령하였는데, 이에 대해 老論 측에서는 肅宗이 甲戌換局 이후 己巳年(肅宗 15년, 1689)의 일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임금의 권위를 앞세워 독단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大臣들의 말을 따랐다고 설명하였으며,[101] 少論 측에서는 丙申處分과 世子交替를 두고 肅宗과 老論이 사전에 거래를 하였다고 추측하였다.[102]

---

100) 『景宗實錄』 5卷, 1年(辛丑, 1721) 10月 10日 기사
… 予有奇疾, 十餘年來, 差復無期, 乃先朝之軫念。 酬應萬機誠難矣。 往在丁酉, 有聽政之命, 則靜攝中, 爲其調便, 至於予躬, 他不暇顧。 及自登極, 夙夜憂懼, 近日症勢, 尤爲沈痼, 酬應亦難, 政事多滯。 今世弟年壯英明, 若使聽政, 國事可有依托, 予得安意調養, 大小國事, 竝令世弟裁斷。…

101) 『丹巖漫錄』 v.1, 60a.
上深懲於己巳事, 不欲立威獨斷, 故勉從大臣之言. 且世子疾患之實狀, 中外皆不知. 此時遽有易樹之擧, 則必生大變. 故諸大臣皆矢死不敢從.

102) 少論 측의 이러한 추측은 肅宗이 세자에게 내린 비답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承政院日記』 肅宗 45年 己亥(1719) 9月 26日 기사.
○王世子再疏。入啓。答曰 :"省疏具悉。昨日批旨中訓戒之言, 爾其式克欽承, 毋庸更辭。且近日事, 處分正而是非明, 可以不惑於百世也。**事關斯文, 顧不重歟? 故特言之, 予志汝遵, 莫之或撓。**"
『黨議通略』, 京城朝鮮光文會(1912) 61쪽

당시의 상황에서 肅宗과 老論大臣들은 선택의 기로 위에 있었는데, 世子代理聽政의 시행 여부라기보다는 聽政의 주체가 되는 세자의 교체 여부에 관한 문제였다. 사안이 세자 교체라는 심각한 문제로 옮겨가면서 대리청정의 명분적 근거나 현실적 타당성에 관한 논의는 사안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이렇듯 대리청정의 可否에 관한 문제가 다른 중대한 사안에 가려 거의 드러나지 못했던 것은 당시의 현실 상황에 기인하는 부분이 컸지만, 이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祖宗朝의 고사로서 世宗代에 대리청정이 시행된 바가 있었다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肅宗은 대신들과 세자의 청정을 두고 논의하는 자리에서 중국과 조선의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했으며, 시행을 결정한 뒤에도 이에 대한 확인 작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하였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肅宗과 신료들은 先王의 행적에서 최소한의 정당성을 찾고자 하였던 것이다.

肅宗 재위기간에 일어난 朋黨간 살육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정국을 주도하고 있던 老論이 세자와 불편한 관계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세자 교체의 문제는 단순히 自派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주제 국가에서 왕위 계승 문제에 있어 국왕의 의지는 절대적인 변수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조선이 군주제 국가이면서 동시에 名分과 禮義를 중시하는 유교국가로, 士大夫層이 지배세력의 주된 지지기반이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유교적 명분에 어긋난 失政을 거듭하면 정치세력으로서의 존립을 보장 받기 힘들었다는 점은 붕당은 물론 국왕까지도 해당되는 사항이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정치의 이러한 특성은 종종 각 정치세력의 행동을 온전히 그들의 私的 이해관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했는데, 왕실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성격이 더욱 두드러졌다.[103]

自崔錫鼎之罷相, 而無以保護言於上者. 上忽荐下嚴敎, 責世子過失, 中外惶惑莫測. 特召左相李頤命, 屛史官, 語秘不聞, 是謂丁酉獨對. 頤命出, 而命世子聽政, 且敎世子曰 : "近日處分, 事關斯文, 顧不重歟? 是非大定, 可以不惑於百世, 予志汝遵, 莫之或撓." 於是人多謂'**上爲老論罪尹氏, 老論亦爲上謀易邸. 其贊聽政, 則將因是以傾之**'云.

103) 비근한 예로 光海君(1575-1641, 재위 1608-1623)의 경우 부왕 宣祖와의 갈등 상황에서 永昌大君에게 그동안 지켜 온 세자로서의 지위를 위협받게 되었을 때 다수의 黨人들이 이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해와는 다소 상충될지언정 광해군의 편에 섰다. 그러나 이후 仁穆大妃(1584-1632)의 폐위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이를 지지한 北人 세력은 물론 광해군 자신조차

세자의 교체는 명분상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했다. 왕위계승 문제는 큰 무리 없이 宗法을 따라 진행되는 것이 정국의 안정을 보장하는 길이었다. 세자 교체는 비록 정국의 중심에서는 밀려났지만 官界와 전국 각지에 포진해 있는 少論 · 南人들의 대대적인 반발을 일으킬 것이 분명한 일이었다.[104] 당시 세자를 둘러싸고 있던 忠逆是非의 민감성은 이후 景宗代의 辛壬獄事와 英祖代의 戊申亂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정권을 장악한 老論係 대신들은 肅宗의 최측근을 차지하고 국왕과 격의 없이 국사를 논의하였으며, 관료조직도 당파 간에 첨예하게 대립할 때와는 달리 비교적 순조롭게 기능하였다. 이러한 당시의 정국 상황은 老論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세자를 보좌한다면 큰 문제없이 조선이라는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105] 老論 大臣들과 肅宗 사이에 어떠한 거래가 오갔는지 현재로서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30년간 세자의 자리를 지켜온 세자를 교체하지 않고 유지할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106]

도 왕위에서 내몰리게 되었는데, 肅宗代 仁顯王后의 폐위를 지지한 南人세력이 결국 패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104) 『丹巖漫錄』 v.1, 60a
是日獨對之擧, 盖出於公天下之心, 非有一毫挾雜之念, 而上深懲於己巳事, 不欲立威獨斷, 故勉從大臣之言. **且世　　子疾患之實狀, 中外皆不知. 此時遽有易樹之擧, 則必生大變. 故諸大臣皆矢死不敢從.**

105) 『肅宗實錄』 43年 60卷, 丁酉(1717) 7月 19日 기사.
… 若使春宮, 參決庶務, 臣等各自盡誠協輔, 則國事安有不可爲之理? …
… 參決之後, 設或有一毫未盡之事, 自上頻頻曉諭, 臣等亦當竭誠協輔, 豈異殿下親政之時? 至於大事, 自上亦可時時裁決, 則聖候諸節, 可臻頤養之功, 而王世子漸習國事, 豈有他慮乎? …

106) 『丹巖漫錄』에서 閔鎭遠은 세자가 생모의 죽음에도 별로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으며 간혹 불손한 행동을 하긴 했지만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나오는 행동이라고 보았는데, 그가 그리고 있는 세자의 증상은 오늘날의 정서장애 환자와 유사하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辛壬獄事에 대한 서술에서도 일관되고 있어서, 景宗의 주위를 宣懿王后와 少論이 차지하고 王命을 조작하여 일어난 사건으로 파악하였을 뿐 景宗이 노론에게 특별한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는데, 참고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丹巖漫錄』, 장서각 소장본(K3 0613 v.1-2)

2. 聽政節目과 국왕의 업무 분담

肅宗代 王世子 代理聽政은 논의가 제기된 후 바로 당일로 시행하도록 결정이 났다. 이는 당시 상황의 긴박함과 논의의 중차대함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肅宗과 노론계 대신들이 筵席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 異論이 개입할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서두른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肅宗은 가장 먼저 春秋館 史官을 江華史庫에 보내어 實錄의 해당부분을 謄書해 오도록 하는 한편, 弘文館에는 唐의 儀節을 參考하고 儒臣들에게 詢問하여 歷代의 故事를 詳定해 오도록 하였으며, 承政院에는 大臣들에게 問議하도록 명하였다.[107]

肅宗이 세자의 聽政을 결정하고 節目을 講定하는 사이 조정에서 주로 논의된 사안은 대리청정 그 자체보다 결정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점들에 관한 것이었다. 肅宗이 왕세자의 허물을 들춘, 혹은 세자 교체를 논한 '未安之敎'에 대해 해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상소와, 肅宗과 李頤命의 獨對를 문제시하며 李頤命을 탄핵하는 상소가 주를 이루었다. 간혹 대리청정보다는 參決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상소나,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려는 국왕을 말리지 않고 침묵하거나 재촉한 대신들에 대한 탄핵 상소도 종종 있었으나, 이미 肅宗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고 이러한 논란들은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所致로 치부되었다. 肅宗은 자신의 언사가 세자를 勉勵하는 것일 뿐이었다는 下敎를 八道에 알림으로서 더 이상의 소동을 막고자 하였으며,[108] 李頤命을 私臣으로 지목하며 공격하는 이들은 철저히 차단하여 李頤命을 보호하였다.

엿새가 지나자 節目이 草定되었고, 李頤命과 閔鎭厚가 肅宗에게 口頭로 문의하였다. 肅宗의 眼疾을 고려한 것이었다. 唐의 고사(歷代)와 世宗代의 사례(本朝)를 참고하여 정해진 聽政節目의 내용은 세자의 聽政 · 朝參 장소, 朝賀를 받을 때의 儀節, 朝參 · 常參의 시행, 祭享의 代行, 所掌事務, 命令의 出納, 侍衛軍士의 수효, 記事 등 세자가 小朝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107) 『肅宗實錄』 60卷, 43年 丁酉(1717) 7月 28日 기사.
108) 『肅宗實錄』 60卷, 43年 丁酉(1717) 7月 25日 기사.

망라하고 있었다.[109]

당시 講定된 聽政節目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聽政과 朝參의 장소는 東宮의 外堂인 時敏堂으로 정하였으며, 聽政 및 朝參 때의 坐向은 西向을 하도록 하였다. 세자가 朝賀를 받을 때 1품 이하의 관원은 庭下再拜하되 世子가 答拜하지 않도록 하였고, 宗室 伯叔과 世子 師傅의 경우에는 昇堂拜禮하면 세자가 答拜하도록 하였다. 이후 朝賀時 昇堂拜禮하는 인원에 1品 大臣들도 추가하도록 수정하였는데, 大臣의 경우 그 지체가 다른 관원들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예우해 준 것이었다. 朝參과 常參은 無事時에만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음 聽政하는 것이므로 최초 1회는 朝參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肅宗은 世子에게 成均館의 釋菜와 宗廟 · 山陵 등의 제향을 攝行하도록 하였으며, 국정 처리에 있어서는 用人 · 刑人 · 用兵의 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세자가 처리하도록 하였다. 세자가 국왕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명령의 出納은 承政院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는 한 기관에서 명령을 출납하여 혼동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각 관청에서 문서가 올라오면 승정원에서 이를 분류하여 大朝와 小朝에 나누어 아뢰도록 하였는데, 매달 朔望에 세자가 처리한 내용들을 抄錄하여 肅宗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세자가 朝賀를 받는 구체적인 儀節은 새로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儀仗과 侍衛도 평상시에 비해 수효를 늘리도록 하였다. 記事에 있어서는 承旨가 들어갈 때 翰林과 注書가 각 1員 씩 따라 들어가도록 하였고, 侍講院의 관리에게 春秋官을 겸하게 하여 聽政할 때 當直 春坊官도 入侍하여 記事하도록 하였다.

聽政時 세자의 儀節은 모두 聽政을 하기 전과 비교하면 한 등급 높아진 대우였으나, 聽政節目에는 國王과 세자 사이의 위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내용도 빠지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 바로 세자와 관련된 용어의 규정인데, 국왕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용어, 국왕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와 세자의 그것에 분명한 차이를 두어 혼동을 피하고 僭濫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였다. 다음의 <표3>은 당시 聽政節目을 講定하면서 국왕(大朝)과 세자(小朝)의 용어를 구

109) 『肅宗實錄』 60卷, 43年 丁酉(1717) 7月 25日 기사.

분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3> 肅宗代 聽政節目 중 國王과 世子의 用語 구분

國王(大朝)	世子(小朝)
敎旨 · 傳旨	徽旨
啓本 · 啓目	申本 · 申目
啓達	申達
入啓	入達
啓依允	達依準
啓辭	達辭
上疏	上書
百拜	再拜
上前開坼	世子宮開坼
謹啓	謹達
啓聞	申聞
稟旨	稟令
上裁	徽裁

※ 비고 : 『肅宗實錄』60卷, 43年 丁酉(1717) 7月 25日 기사 참조.

肅宗代에 마련된 聽政節目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世宗代의 사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稱臣 문제는 世宗代에는 민감하게 논의되었으나 그 사이에 신료들이 세자에게 稱臣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별 다른 논란거리가 되지 못했다. 세자의 지위에 있어서 조선 전기와 후기 사이에 일정한 변화가 있었음을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이다.[110]

110) 조선시대 왕세자에 대한 稱臣의 일반화는 국왕 개인에 대한 尊崇이 점차 왕실 구성원에게까지 확대되면서 세자의 지위도 함께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肅宗實錄』60卷, 43年 丁酉(1717) 7月 25日 기사.
… 頤命曰: "…又政府啓云: '世子裁決庶務, 命令稱徽旨, 諸司申達之文, 稱申本、申目, 皆呈承政院, 承旨出納申達。 其署銜, 申本則知某曹事具銜, 申目則只稱某曹事。 承旨竝不稱臣。 其申本、申目行移之事, 承政院每朔望, 抄錄啓聞。' 從之矣。 今當一依世宗朝所定之制, 而詹事院, 《大典》已無其職, 疑是侍講院之初名矣。 平日則世子命令侍講院, 主其出納, 亦其行其曾前所擧行者。 凡係聽政時命令, 承政院主之, 而入啓入達公事, 區別後入達者, 以啓本爲申本, 啓目爲申目, 文書規式, 亦依世宗朝所定, 啓依允, 則改以達依準乎? **中世以來, 大臣以下皆稱臣於東宮, 入達文書, 承旨亦當稱臣, 今無可論矣。**"…

肅宗代의 대리청정은 그 시행 동기가 분명하였다. 肅宗의 병세가 악화되어 정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정책 시행의 의도가 국왕의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청정절목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국왕의 업무를 세자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 된다. 이 부분을 살펴본다면 당시 국왕과 신료들이 파악하고 있던 국왕의 업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가리키며, 또 그 중에서도 세자에게 맡길 수 없어서 국왕이 직접 처리해야만 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당시 조선의 국가 운영체제와 국왕의 업무, 나아가 왕권의 핵심이 되는 사안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聽政節目의 논의 과정에서 언급되고 있는 국왕의 裁決을 기다리는 국가의 機務는 (1)軍兵의 調發과 調練, (2)宿衛, (3)兩銓(吏曹 · 兵曹)의 除拜, (4)禮曹의 祭享과 禮制, (5)戶曹의 經費, (6)宣惠廳의 大同米, (7)刑曹의 刑獄, (8)工曹의 營繕, (9)三司의 箚啓, (10)百官 · 士庶의 上章, (11)八道藩帥의 狀聞, (12)直啓하는 衙門의 啓目 · 草記, (13)客使, (14)邊報 의 14가지였는데, 이에 대해 肅宗은 用人(3) · 刑人(7) · 用兵(1, 2)은 직접 결단하고 上章(10), 箚啓(9), 狀聞(11), 啓辭(12)는 동궁에게 보고하도록 하되 중요한 일만 자신에게 稟議하여 裁決하도록 하였다.

국왕과 세자간의 업무 분담에 관한 부분은 聽政 시행에 있어 가장 까다로운 사항이라 聽政節目이 반포된 이후에도 수차례 논의되었는데, 이는 업무를 분담하는 데 있어서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疏章과 狀啓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뒤섞여 있는데, 肅宗은 이 가운데 用人 · 刑人 · 用兵과 관련된 부분만 承政院에서 따로 뽑아내서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대로 시행할 경우 한편으로는 承政院에서 본래의 문서들을 임의로 나누는 작업을 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疏章 · 狀啓가 나뉘어 둘 이상의 비답을 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111]

---

111) 『肅宗實錄』60卷, 43年 丁酉(1717) 7月 29日 기사
○辛巳/政院啓曰: "臣等伏見節目中, 凡內外官遞罷, 竝爲入啓云云。 其後筵中, 以解職與用人, 一體爲之可也爲敎, 則凡外方罷黜以上請罪狀啓, 三司改差以上論罪之箚啓, 本院捧傳旨之事, 皆將稟裁於大朝乎? 此外臣僚辭疏、辭單, 亦係解職, 當一體施行乎? 臺啓中若涉用人、刑人、用兵三件事, 則當爲入啓於大朝, 三件外, 當爲入達於東宮, 而但一臺官之分啓兩宮, 亦似未安。 此事必須稟定, 然後可以奉行。

그 뿐만 아니라 肅宗이 직접 管掌하는 用人 · 刑人 · 用兵 가운데 특히 用人의 경우 업무의 범주가 모호하였다. 肅宗은 처음에 內外 · 大小 官員의 遞職과 罷職 · 解職을 모두 用人의 범주에 넣어 자신의 재가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할 경우 外方罷黜 이상의 罪를 청하는 狀啓나 三司에서 改差 이상의 죄를 논하는 箚啓, 承政院에서 傳旨를 받드는 일과 같은 일도 모두 국왕에게 入啓해야 하였으며, 신료들의 辭職上疏, 辭職單子도 解職에 해당하여 모두 入啓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보고되는 문서의 형식에 따라 내용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문서 안에 여러 내용이 혼재한 상태로 상달되고 있던 당시의 체제에서 肅宗 자신이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 사안들만 선별적으로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결국 肅宗은 탄핵 등의 내용을 주로 다루는 臺啓(兩司의 疏啓)는 자신에게 稟議한 후 裁決하도록 하는 한편, 外方官의 罷黜 이상의 죄를 청하는 狀啓와 三司의 改差 이상의 죄를 논하는 疏箚는 入啓하도록 하되 辭職疏 · 辭職單子의 경우 불분명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세자에게 올리도록 하였다.[112] 문서의 종류와 사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획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한 셈이었으나, 그 역시도 완벽하지는 않았다.

聽政節目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肅宗은 국왕이 처리해야 할 機務들 가운데 특히 인사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관여하고자 하였음이 확인된다.[113] 이는 관료조직의 구성과 안배가 국왕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음을 의미하는데, 기본적으로 국왕이 자신의 의지를 국정에 반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신료들이 국왕의 의도에 반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肅宗은 대소신료들의 任免이 모두 자신에게서 비롯되기를 바랐으나, 인사권에 대한 肅宗의 이러한 집착은 질병에 시달리는 국왕이 왕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면서 보이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는

且禮官所稟一疏啓中, 所論諸條中, 有用人、刑人、用兵等事, 拈出別爲書入事判下, 而不言自某司書入。 以是令本院爲之, 而政院之職, 專在出納文書, 則拈謄他人章疏, 已非其職。 且一疏啓之分而二之, 各下批答, 殊涉未安。 本院終難奉行, 請令政府, 更稟以處。”…

112)『肅宗實錄』60卷, 43年 丁酉(1717) 7月 29日 기사.

113) 世宗은 인사권에 있어서 3품 이하 관원의 除拜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에 東宮印을 사용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肅宗의 조치와 비교된다.
『世宗實錄』 122卷, 30年 戊辰(1448) 9月 10日 기사.

할 수 없는 것이었다. 肅宗이 대리청정을 시행하면서 업무 분담 과정에서 보여준 이러한 모습들은 肅宗代의 대리청정이 肅宗 자신의 강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황상 불가피하게 시행된 조치였던 데다가 肅宗이 세자의 능력을 불신하고 있었던 사실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조선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 대규모 국제 전쟁을 치르면서 격변기를 맞이하였다. 전후 국가 재건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은 장기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즉각적인 단발성 효과를 노릴 수 밖에 없는 것들이었고, 전쟁통에서 백성들은 지배층의 허약함을 目睹하였다. 상업은 느리지만 꾸준히 발전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국가에서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자원도 늘어만 갔다. 顯宗 · 肅宗代에 조선을 덮친 饑饉은 당시 조선이라는 전근대 국가의 능력 범위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재난이었고, 향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기존의 질서에 균열이 가고 있었다. 肅宗代 세자가 대리청정하던 시기에 조정에서 논의되던 사안들을 살펴보면, 전국 각지의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한 賑恤, 각국 使臣의 파견과 영접, 貨幣의 鑄造, 良役變通, 量田 등 상당히 전문적이면서 까다로운 문제들이었다.[114]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전란기에 설치되었던 備邊司의 기능이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는 합좌기구의 성격을 띠게 된 것도 조선의 국정 업무가 그 내용이나 양적인 면에서 모두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특히 肅宗末에 시행된 八道句管堂上制와 같은 경우 각 지방의 狀啓를 전담해서 처리하는 堂上官을 비변사에 배정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왕에게 지방관의 장계가 직접 入啓되던 기존의 체제에 負荷가 걸리자 그에 따른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이상적인 체제가 점차 유연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왕세자의 대리청정은 새롭게 조명되었던 것이다.

국왕의 업무는 곧 국왕의 권한이므로 아무나 감히 대행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었고, 禪讓은 조선의 정치 문화상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參決

114) 『萬機要覽』은 19세기 초에 정리된 책으로, 국왕의 업무 가운데 특히 국가 재정과 경제, 군사 등에 관한 설명과 수치자료들을 망라한 국정 자료집이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국왕이 처리해야할 사안들도 점차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은 세자의 정치 수업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방안이었으나, 국왕의 번다한 업무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는 것은 왕권이 입게 될 손상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국왕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신들은 草定한 節目에 肅宗이 지시한 내용을 반영하여 別單子를 작성하였고,[115] 禮曹에서 이를 전국에 반포하였다.[116] 세자는 7월 26일과 27일 두 번에 걸쳐 세자 聽政의 傳敎를 거두어줄 것을 상소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왕세자는 肅宗 43년(丁酉, 1717)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代理聽政을 거행하였는데, 이날 聽政에 관한 儀節文도 확정하였다. 代理聽政 논의가 시작되고 불과 보름도 되지 않아서 代理聽政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三. 肅宗代 대리청정이 후대에 미친 영향과 그 의미

1. 대리청정의 계승과 제도화

肅宗代 대리청정은 肅宗 43년(丁酉, 1717) 8월 1일부터 시행되어 46년(庚子, 1720) 6월 13일 세자가 등극할 때까지 약 3년 동안 시행되었다. 肅宗의 병세가 악화되자 聽政節目에서 정한 업무 分掌과는 상관없이 人事 · 刑罰 등의 사안까지도 世子가 裁決하는 경우가 잦아졌는데, 결과적으로 국왕 업무의 측면에서는 점진적인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셈이다.[117]

세자의 국정 처리 능력은 대리청정을 시행하기 전부터 숙종이 염려했던 부분

115) 『肅宗實錄』 60卷, 43年 丁酉(1717) 7月 26日 기사.
116) 『肅宗實錄』 60卷, 43年 丁酉(1717) 7月 28日 기사.
117) 『肅宗實錄』 64卷, 45年 己亥(1719) 11月 22日 기사.
『肅宗實錄』 64卷, 45年 己亥(1719) 11月 24日 기사.
『肅宗實錄』 64卷, 45年 己亥(1719) 11月 30日 기사.

이었고, 이에 대한 논란이 사안의 핵심이 되었음은 앞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신료들은 세자를 힘껏 보필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숙종을 설득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세자의 정무 처리는 대리청정 기간은 물론 이후 세자가 왕위에 등극한 뒤에도 신료들로부터 그리 후한 점수를 받지 못했다.

당시의 大臣들은 세자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자는 신료들을 인접할 때 침묵하여 물어보는 일이 없었고, 성의없이 하교하는 경우가 잦았다.[118] 신료들에 의하면 그는 평소 침묵을 지키다가 '그대로 하라(依爲之)', '마땅히 유의하겠다(當留意矣)', '廟堂에서 稟處하도록 하라(令廟堂稟處)' 등 상투적인 명령을 내렸으며, 국정 사안의 可否를 결정할 때에도 근거 없이 아무렇게나 재결하는 경우도 있었다.[119] 급기야는 세자가 承旨나 大臣들에게 이유 없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하였는데,[120] 세자의 이런 태도에 대한 신료들의 지적도 점차 잦아지는 모습을 보인다.[121] 당시의 이러한 정황들은 세자가 肅宗의 자리를 신료들이 만족할 만큼 대신하지 못했으며, 대리청정으로 인한 학습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웠음을 시사한다. 『丹巖漫錄』에서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세자가 代理한 뒤로도 주상께서는 여러 승지에게 명하여 날마다 공사를 가지고 入對하도록 하여 재결하는 것을 도우셨는데, 言事章疏처럼 말을 엮어서 批答할 수 있는 것들은 주상께서 세자를 대신하여 처리하셨다.[122]

---

118) 『肅宗實錄』 64卷, 45年 己亥(1719) 9月 24日 기사.
『肅宗實錄』 64卷, 45年 己亥(1719) 10月 20日 기사.

119) 일각에서는 세자가 자신을 위기에 빠뜨리려는 老論 大臣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문제없이 대리청정 기간을 버티기 위해 신료들의 의견을 따르고 자신의 의견을 내비치지 않는 방법을 고안했다고 주장하는데, 세자가 즉위한 이후의 모습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신빙성이 떨어지는 설명이다.
이종호, 『영조를 만든 경종의 그늘(2009)』,글항아리.

120) 『肅宗實錄』 64卷, 45年 己亥(1719) 6月 11日 기사.
『肅宗實錄』 64卷, 45年 己亥(1719) 6月 17日 기사.

121) 『肅宗實錄』 64卷, 46年 庚子(1720) 1月 5日 기사.
『肅宗實錄』 64卷, 46年 庚子(1720) 1月 19日 기사.
『肅宗實錄』 64卷, 46年 庚子(1720) 1月 25日 기사.

세자가 肅宗의 업무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肅宗이 세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세자가 정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은 세자가 즉위한 이후의 實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부분이다.

> 右議政 崔錫恒이 請對하여 여러 승지들에게 격일로 入侍하여 여러 신하들의 章疏를 읽게 하고, 聖敎를 받들어 批答을 써서 내리도록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그 뒤에 승지들이 비록 입시하여 상소를 읽더라도 임금이 혹은 끝내 응답이 없었으므로, 승지들이 가끔 문서를 임금 앞에 남겨둔 채 물러나오곤 하였다.[123]

위에서 인용한 實錄의 내용은 景宗代 辛壬獄事 이후의 기록으로, 정권은 世子保護論을 펼쳤던 少論이 다시 장악하게 된 상황이었다. 少論 宰相들도 景宗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실은 앞서 肅宗이 세자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는『丹巖漫錄』의 서술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부분이다. 국정 업무에서 오는 피로와 압박감으로 인해 景宗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었고, 국왕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신료들의 판단에 아무렇게나 맡기는 가운데 국정은 정상적으로 처리되기 힘들었다. 왕권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124]

---

122) (前略)… 世子旣代理, 上命諸承旨逐日持公事入對, 贊助裁決. 若言事疏章可以措辭批答者, 上代世子批判焉.… (後略)
『丹巖漫錄』, 장서각 소장본(K3 0613 v.1) 60b.

123) ○右議政崔錫恒請對, 請令諸承旨, 間日入侍, 讀諸臣章疏, 承聖敎書批答以下, 上從之。 然其後承旨雖入侍讀疏, 上或終無酬答, 承旨等往往留牘上前而退矣。
『景宗實錄』6卷, 2年 (壬寅, 1722) 3月 8日 기사.

124) 세자(景宗)의 이상행동에 대한 다른 實錄 기사인데, 일부 신료들이 景宗의 업무 처리 방식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의 뜻대로 업무 처리를 유도한 정황이 기록되어 있다.
『景宗實錄』13卷, 3年(癸卯, 1723) 9月 20日 기사
○丙申/承旨持公事, 玉堂召對, 同爲入侍。 諸臣才進伏, 上下嚴敎, 左議政崔錫恒, 命拿鞫嚴斷, 又

조선후기의 왕세자 대리청정은 肅宗代에 최초로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그다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세자 대리청정은 이후 한 세기 가까이 꾸준히 시행, 또는 시도되었다. 후대에 시행된 대리청정 사례들이 肅宗代 사례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후대의 대리청정 논의과정과 聽政節目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景宗朝의 王世弟 聽政節目, 英祖朝의 王世子 聽政節目[125]과 王世孫 聽政節目,[126] 純祖朝의 王世子 聽政節目[127]은 모두 肅宗代의 사례를 典範으로 하여 마련되었다. 肅宗代 대리청정의 시행에 世宗代의 선례가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肅宗代의 대리청정이 다시 후대의 왕들에게 '선왕의 제도(先王之制) '로서 기능하였던 것이다.

景宗代의 왕세제 대리청정은 세자가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肅宗代에 왕세자 대리청정을 논의할 때와 같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속전속결로 처리하려하였던 老論勢力이 역적으로 몰리고, 王世弟가 된 延礽君마저 신변의 위협을 받는 형국이 되면서 景宗代의 王世弟 代理聽政 명령은 이내 환수되었다.[128]

당시의 대리청정 논의는 執義 趙聖復(1681~1723)이 왕세제에게 정치수업과 업무보조를 겸하는 參決(參聽)을 시킬 것을 건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景宗이 자신의 병세와 肅宗代의 고사를 언급하며 대리청정, 그것도 大小事 일체를 세제에게 위임하는 대리청정을 명령하면서 發論이 되었다.[129] 신료들과 왕세제, 종친들까지 나서서 만류하였으나 景宗은 '左右가 하는 것이 옳겠는가? 世弟가 하는 것

命玉堂柳弼垣、尹游拿推。 承旨梁廷虎欲陳達, 上遽命罷職。 已而上下敎曰: "因一時之火, 遽有過擧。" 承、史、玉堂更入侍, 諸臣復入, 上仍使承旨, 稟裁公事。 玉堂亦講讀。 講訖, 廷虎等交陳左相忠勤狀, 上不答。 右議政李光佐請對, 陳請收還, 而言甚懇惓。 都承旨李眞儉繼白之, 上又下嚴敎, 錫恒極邊遠竄, 眞儉削奪官爵, 門外黜送。 光佐苦口力請, 上始命還寢。 錫恒待命金吾, 上遣史官, 諭令勿待命。 辛丑改紀之初, 中外想望風采, 庶幾振淬一新之政, 其後一向淵默, 未見吁咈之美, 而間有過擧。 蓋多人入侍, 或臨筵移晷, 則火熱輒上升而然矣。 **前席强爭, 多準請, 故臺諫必求對論啓, 而從違之間, 亦有斟量者。 相臣誠得人, 則或可以做治, 而上下交泰之道, 則闕矣。 時人始憂悶不知所出, 而一鏡輩, 方傲然自居, 以功臣, 操弄朝權, 氣勢張甚, 任鼎軸者, 旣無力量, 不能裁抑, 廟薦亦循其所欲, 時事無可言矣。**

125)『英祖實錄』69卷, 25年 (己巳, 1749) 1月 23日 기사.

126)『英祖實錄』126卷, 51年 (乙未, 1775) 12月 8日 기사.
『英祖實錄』126卷, 51年 (乙未, 1775) 12月 18日 기사.

127)『純祖實錄』28卷, 27年 (丁亥, 1827) 2月 9日 기사.

128)『景宗實錄』5卷, 1年 (辛丑, 1721) 10月 17日 기사.

129)『景宗實錄』5卷, 1年 (辛丑, 1721) 10月 10日 기사.

이 옳겠는가?'라며 세제에게 대리청정을 시키려는 자신의 의도가 순수함을 주장하였고, 이내 노론 측에서는 그렇다면 肅宗代(丁酉年)의 節目에 근거하여 聽政節目을 講定하려 하였다.[130] 이 과정에 참여하였던 노론 대신들은 肅宗代에 왕세자의 대리청정을 주장하고 시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보다 강경하게 세제의 대리청정을 반대하였던 소론계 인사들에 의해 逆臣으로 몰렸고, 이내 정국의 주도권을 뺏기게 되었다.

肅宗朝에서 景宗朝에 이르는 시기에 왕세자 ·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주장한 老論 측의 일관된 입장은 先代의 사례를 토대로 국왕의 상태가 국정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기 왕위 계승권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왕의 상태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국왕과 신료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였다고 볼 수 있는데, 국왕의 능력에 대한 懷疑는 곧 逆心을 의미하던 전통적인 가치관 하에서 대리청정을 주장한다는 것은 신료들로서는 매우 큰 위험부담을 지는 행동이었다.[131] 景宗代 대리청정이 논의될 당시 노론 대신들은 肅宗에게 그랬던 것만큼 새로 즉위한 景宗과 밀착하여 교감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정계에 복귀한 소론 인사들을 논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배제하려다가 오히려 景宗의 주위를 장악한 소론에게 반격을 당했다.

景宗代의 대리청정 논란 이후 벌어진 辛壬獄事는 대리청정 논의에 내재되어 있는 민감성과 폭발력을 다시 한 번 상기 시켜주는 사례이면서, 동시에 군주제 국가의 군주로서 조선의 국왕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대리청정 기간 세자의 불량한 태도에 대해 쓴 소리를 했던 노론계 대신들은 결국 逆臣으로 몰려 죽음을 당했다.

景宗代의 대리청정이 결과적으로 여느 讓位波動과 비슷한 결국을 맞이했다

---

130) 『景宗實錄』 5卷, 1年 (辛丑, 1721) 10月 16日 기사.
김문식은 「왕세제 영조의 대리청정(2007.6)」에서 영조가 왕세제 시절 4년간 대리청정을 실시했으며, 국정에 직접 참여하기보다 국가 전례를 집행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왕세제 대리청정의 명령은 1721년 10월 10일 내려졌다가 17일에 환수되었으며, 국가 전례의 대행은 대리청정이 아니더라도 세자(세제)가 대행할 수 있는 성격의 업무이므로 景宗代의 왕세제 대리청정은 시행된 것이 아니라 시도되었다고 설명해야 한다.

131) 『孟子』 「離婁章句上」에 등장하는 '吾君不能, 謂之賊'이라는 표현은 실제 肅宗 · 景宗代에 대리청정을 주장한 신료들을 공격하는 상소문들에서 자주 발견된다.

면, 英祖代에는 실제로 대리청정이, 그것도 두 번씩이나 시행되었다. 英祖 25년(己巳, 1749) 英祖는 자신의 禪位 선언이 大妃와 신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종의 타협안으로 세자의 대리청정을 제안하고 이를 관철시켰는데, 八道에 반포한 전교에서 肅宗이 景宗에게 대리청정을 명령했던 취지를 계승하였음을 천명하였다.[132]

思悼世子 聽政節目의 내용은 한결같이 肅宗代 丁酉年(1717)의 사례를 따르도록 하였는데, 다만 肅宗代에 사용하였던 흰색 令牌를 靑色으로 바꾸었고 지형상의 문제로 편의를 위해 聽政時의 坐向을 東向으로 하는 등의 소소한 변화가 있었다.[133] 英祖의 병세가 肅宗 때와 같이 위급하여 세자가 侍湯하는 중에 있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朝參에 음악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용어 구분에 있어서도 일부 추가하였으나, 肅宗代에 마련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었다.

<표4> 英祖代 思悼世子 聽政節目 중 추가된 國王과 世子의 用語 구분

國王(大朝)	世子(小朝)
狀啓	狀達
謹啓	謹狀
伏候敎旨	伏侯徽旨

※ 비고 : 『英祖實錄』69卷, 25年 己巳(1749) 1月 23日 기사 참조.

주지하다시피 思悼世子는 즉위하지 못하고 父王 英祖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代理聽政 중에 발생한 비극으로, 세자는 이미 14세 때부터 13년 이상 대리청정

132)『英祖實錄』69卷, 25年 (己巳, 1749) 1月 27日 기사.
○丙子/以王世子代理, 告太廟, 頒敎八路。王若曰 : "昔先王, 建儲副, 承宗廟社稷之重, 撫軍監國, 載於史傳, 其所從來遠矣。 惟我先朝丁酉, 以聖候久在靜攝, 遠稽往牒, 近採祖典, 命我皇兄代理, 斯義也。 卽建天地考三王不謬, 而雖爲子孫萬世庸行之典, 可也。…"

133)『承政院日記』 英祖 25年 己巳(1749) 1月 23日 기사.

을 하던 중이었다. 英祖는 죽은 세자의 아들인 세손(正祖)을 후계자로 삼았는데, 사도세자 때처럼 대리청정을 서두르진 않았다. 세손의 대리청정은 英祖의 건강이 악화된 이후에 비로소 시행되었으나, 세손은 이미 參決의 형태로 英祖 곁에서 정치수업을 받고 있었다.

英祖 51년(乙未, 1775)에 시행된 왕세손의 대리청정도 肅宗代의 사례를 참고하여 진행되었는데, 節目에 있어서는 聽政 處所가 慶熙宮으로 바뀌면서 景賢堂과 尊賢閣으로 바뀌었으며 令牌는 思悼世子 때와 같이 靑色으로 하였다. 英祖의 건강이 악화되어 直宿 중이었으므로 음악은 肅宗朝의 예에 따라 정지하였으며, 이 밖에 용어 구분에 관한 언급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

<표5> 英祖代 正祖(王世孫) 聽政節目 중 추가된 國王과 世子의 用語 구분

國王(大朝)	世子(小朝)
奉敎敬依長銜	奉令敬依長銜
奉敎可長銜	奉令可長銜
有啓目何如/啓依允短銜	有申目何如/達依準短銜
無啓目何如/啓依所啓施行	無申目何如/達依所達施行
回啓	回達
傳曰 : 依啓	令曰 : 依達
狀達上裁/奉敎長銜	伏候徽裁/奉令長銜
謹百拜上言	謹再拜上言
傳曰允/傳曰不允	令曰依/令曰不從 · 勿煩
傳曰知道	令曰知悉
批答	下答
省疏具悉	覽書具悉
承旨傳諭/史官傳諭	承旨往諭/史官往諭
中嚴	內嚴
外辦	外備
諸司預備	諸司預待
不允批答	不許下答 · 敦諭 · 別諭 · 安心調理
入侍/引見	入對/引接

※ 비고 : 『英祖實錄』126卷, 51年 을미(1775) 12月 8日과 18日 기사 참조.

<표5>에서 보듯이 英祖代의 왕세손 대리청정에서는 각종 용어의 사용을 더욱 친절하고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大朝와 구분되는 용어상의 차이 외에도 사용처와 대상에 따라 구분되는 용어와 대처법도 아울러 정리해 놓았다. 예컨대 守陵官을 역임하였던 崇品宗臣 및 崇品都尉의 掃墳呈辭나 加土呈辭에는 給由馬와 澆奠床을 갖추어 지급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나, 遞罷이상은 令旨, 拿推 이하는 徽旨로 용어를 구분하도록 한 것들이 그것이다. 전체적인 구성과 운용원리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聽政節目이 포함하는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추가·정리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134]

純祖 27년(丁亥, 1827)에 시행된 孝明世子의 대리청정은 英祖 51년(乙未, 1775)의 왕세손 대리청정 사례를 참고하였다.[135] 청정절목의 내용상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보이지 않으며, 업무의 분담에 있어서도 用人 · 用刑 · 用兵에 관한 사항을 大朝에 啓稟하고 그 밖에 곤란한 문제가 있으면 大朝에 문의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유지되었다.

代理聽政은 그 시행 빈도가 잦아지면서 變例에서 점차 常例로 자리 잡아가고 있던 모습은 18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편찬된 官署志 및 法典類 圖書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高宗 2년(乙丑, 1865)에 조선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편찬된 법전인『大典會通』을 살펴보면 왕세자 대리청정에 관한 항목이 발견되는데, 成宗 12년(辛丑, 1481)의 『經國大典』, 英祖 22년(丙寅, 1746)의『續大典』에서 발견되지 않는 대리청정 관련 항목들이 正祖 9년(乙巳, 1785)에 편찬된『大典通編』을 계기로 추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136]『大典通編』과 비슷한 시기인 正祖 8년(甲辰, 1784)에 발간된 官廳志인 『侍講院志』의 경우에도 '代理聽政'이라는 하나의 항목을 따로 마련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137] 高宗 29년(辛卯, 1891)에 편찬된『御定离院條例』에서도 '聽政'이라는 목차를 따로 마련해 두어 대리청정의 절차와 관련 故事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38]

---

134)『英祖實錄』126卷, 51年 (乙未, 1775) 12月 18日 기사.
135)『純祖實錄』28卷, 27年 (丁亥, 1827) 2月 9日 기사.
136) 조두순 외, 한국법제연구원 역주,『大典會通』(한국법제연구원, 2000)
137)『侍講院志』上 下(2003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奎貴 907)

위에서 살펴본 자료들에 수록된 내용들을 토대로 당시의 현상을 파악해 보면, 肅宗代 이후 조선 왕실에서 대리청정이 變例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빈번하게 시행되면서 최소 18세기 후반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제도라고 할 만큼 常例로 받아들여지는 단계에 도달하였고, 이것이 다시 正祖代에 이르러 국가의 典章制度를 整備하는 과정에서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다양한 문헌들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숙종대 대리청정과 18세기 조선의 정치문화

肅宗代의 왕세자 대리청정은 정치사적으로 丙申處分 이후 老論의 정국 주도로 일단락된 肅宗 말기의 당파간 갈등이 이후 景宗代의 辛壬獄事와 英祖代의 戊申亂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국면으로 연계되는 사이에 위치한 사건으로, 前後의 정치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 되는 사건이다. 이 당시 시행되었던 왕세자 대리청정은 이후 조선왕실의 왕위계승 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여러 王代에 걸쳐 민감한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본고에서는 肅宗代의 대리청정이 시행된 배경과 과정, 그리고 후대에 미친 영향까지 살펴보면서 18세기 조선의 정치 문화가 반영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치문화적 요소는 해당 시기의 정치사를 이해하는 데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肅宗代의 왕세자 대리청정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신료들이 적극적으로 세자의 청정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국왕 생전에 일어나는 양위 파동과 같은 왕위 계승에 관련된 사안들에 있어서 문제를 발의하고 논의를 주도하는 주체가 주로 국왕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肅宗代의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신료들의 반응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肅宗이 세자 교체의 의사를 타진하던 과정에서 돌출된 것으로, 대리청정

138) 『御定离院條例』(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 5653)

을 이미 피할 수 없는 조치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기존의 세자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이었다. 이는 당시 조선의 정치 문화에서 '세자 교체'라는 사안이 갖는 무게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미 책봉된 세자의 지위가 가지고 있는 공고함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황상 이미 국왕으로서 제 역할을 해낼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웠던 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체를 막기 위해 신료들은 세자의 대리청정을 주장하는 상당한 무리수를 두었는데, 그들이 감수한 위험의 크기는 후대에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주장했다가 역모로 몰리게 된 辛壬獄事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肅宗代의 사례가 조선 사회에서 터부시되던 '왕위 선양', '세자 교체', '세자 대리청정'이라는 사안들 가운데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었던 '세자 대리청정'이 선택되어 시행되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라면, 景宗代의 사례는 대리청정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즉 권력의 분할과 양도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내재하고 있는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인 셈이다.

전통적인 유교국가에서 왕세자의 역할은 통상 視膳과 問寢으로 요약되어 왔다. 여기에 더해 聖君이 되기 위한 제왕학으로서 儒家 경전을 講磨하기를 요구받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인 세자의 역할은『禮記』「文王世子篇」에 기록된 고대의 聖君이었던 文王의 세자시절 모습을 典範으로 삼는 것이었다. 왕세자는 국정에 개입하기보다는 효도와 학문에 힘써야 했다.

비단 도덕적 · 관념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도 왕조국가에서 세자의 지위는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었다. 차기 왕위 계승권자로서 국왕 사후 자연스럽게 왕위에 오를 세자의 지위는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 가운데 왕좌에 가장 근접해 있었다. 동양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세자, 혹은 태자의 지위를 두고 東宮 · 春宮 · 儲貳 · 儲副 · 貳極 등 여러 가지 별칭을 두었는데, 그 중 '國本'과 '貳極'과 같은 단어는 왕실의 미래, 그리고 국가의 이인자라는 의미에서 세자의 지위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용어이다. 일찍이 世宗이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령하면서 언급한 다음의 내용은 왕세자 대리청정이라는 조치가 기본적으로 국왕과 세자간의 신뢰관계, 혹은 국왕의 정국 장악 능력에 의지하는 부분이 클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조정에서는 宗親을 의심하고 꺼리는 것이 심하나, 그 사이에 혹 攝政한 때도 있다. 나는 그렇지 아니하여 종친에게도 매우 후하게 대접하고 조금도 의심하고 꺼리는 마음이 없다. 하물며 세자는 장차 나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릴 사람인데 그러겠는가?"[139]

세자는 국왕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나, 그에게 업무를 분할해 주는 것은 곧 직접적인 권력의 이양을 의미했으므로 국왕에게는 세자와 관료집단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함께 그에 대한 적절한 제어력이 동시에 요구되었다. 위에서 인용한 世宗의 발언은 세자 대리청정의 위험성과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신뢰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肅宗은 비록 세자의 능력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았으나, 세자가 반역을 꾀한다든지 하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일각의 주장대로 세자가 肅宗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다면, 세자의 대리청정은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이다. 세자의 입장에서도 차기 왕위계승권자로서 굳이 黨色이라고 하는 정치적 성향을 가질 필요가 없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세자가 父王과, 혹은 특정 당파와 角立했을 것이란 접근방식은 다분히 심정적인 추측이다. 실제로 老論 집권 세력과 세자의 직접적인 갈등이나 마찰은 대리청정 과정, 혹은 즉위 이후에 빚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肅宗의 정국 운영방식은 세자를 민감한 정치적 존재로 만들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자가 대리청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세자 자신이 별다른 정치적 행위나 입장을 드러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肅宗과 왕세자(景宗), 왕세자와 노론 집권 세력간의 관계에 지나친 갈등 관계를 상정하고 상호 반목했다는 식으로 보는 기존의 당쟁사적 해석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肅宗代 이후의 대리청정 사례들에서 드러나는 18세기 조선 왕실의 또 다른 특징은, 대리청정이 일찍이 15세기에 행해진 이후 거의 300년 가까이 지난 다음

139) 『世宗實錄』 86卷, 21年 (己未, 1439) 7月 4日 기사
…上曰: "中朝之猜忌宗親甚矣, 而其間或有攝政之時。 予則不然, 其於宗親, 待之甚厚, 略無猜忌之心, 而況世子將繼予治國者乎? …

에야 현저히 달라진 주변 환경 속에서 다시 시행될 수 있었던 현실적인 여건에 근거한다. 肅宗代를 비롯해서 18세기에 왕세자 대리청정이 연속해서 시행 · 시도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요인 중 하나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왕실과 왕위계승이었다.

世宗 말년에 文宗에게 대리청정을 맡기고 世宗은 비교적 만족스러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었고, 文宗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孝子이자 聖君으로서 안정적인 왕위계승을 할 수 있었다.[140] 그러나 그 이후 肅宗代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왕세자 가운데 현실적으로 대리청정을 경험할 만한 조건을 갖추었던 세자는 睿宗(1450~1469, 18세 즉위), 燕山君(1476~1506, 18세 즉위), 仁宗(1515~1545, 29세 즉위), 光海君(1575~1641, 33세 즉위), 昭顯世子(1612~1645, 33세 사망)의 5명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바로 이 5명의 父王이 모두 정상적인 세자시절을 겪지 않은 왕이라는 점인데, 각각 꼽아보자면 世祖(찬탈), 成宗(亶山大君, 후계자 선정), 中宗(反正), 宣祖(河城君, 후계자 선정), 仁祖(反正)가 父王으로 있었다. 그리고 이 5명의 세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공통점은 바로 한 명도 자신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조선시대의 왕위계승이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국왕이나 세자의 지위에 모종의 불안요소가 있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세자 대리청정은 시행하고 싶다고 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제도는 아니었다.

17세기 이후 조선왕실은 '三宗血脈'으로 대변되듯이 王統이 매우 위태로웠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아슬아슬하게 이어져온 왕실 혈통은 국왕들에게 강한 정통성을 부여하였으며, 이는 어느 정도 당시의 왕권에 반영되었다. 비교적 안정적인 왕위계승과 왕세자에 의한 대리청정은 肅宗代 이후 약 100여년간의 왕위계승 양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19세기 이후 왕위 계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垂簾聽政이 빈발한 결과 해당시기의 정치상을 王室 外戚에 의한 勢道政治期로 정의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과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

140) 『文宗實錄』 13卷, 2年(壬申, 1452) 9月 1日 「文宗大王誌文」

肅宗代의 왕세자 대리청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사회에서 세자 교체가 갖는 사안의 중대함, 세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왕실과 관료집단에 대한 肅宗의 장악력 등 조선 왕실의 家法과 유교국가로서 조선의 지배층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성향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현상이었다. 이는 동시기 중국의 만주족 왕조(雍正帝)의 경우 태자 책봉으로 인해 발생될 정치적 갈등과 폐단을 우려하여 인해 太子密健法을 도입하였던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부분으로, 왕세자 대리청정은 이후 18세기 전반에 걸쳐 시도되면서 18세기 조선의 특수한 왕위계승 양상으로 자리 잡았다.

맺음말

본 논문은 전근대 왕조국가에서 좀처럼 시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지는 '왕세자 대리청정'이라는 조치가 어떻게 한 나라 안에서 100여년 사이에 무려 5차례나 시도되고 그 중 4차례는 실제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고자 하는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5차례의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타당한 가설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시간과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우선 연속된 사례 가운데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하는 肅宗代의 대리청정 사례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앞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조선 후기에 시행된 대리청정이라는 조치 그 자체에 주목한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대다수의 정치사 연구들은 조선 후기의 당쟁사가 지니는 비중으로 인해 각 시기에 시행된 대리청정을 당파간의 정치적 투쟁이나 王權과 臣權의 대립이라는 구도로 해석해 왔고, 다른 한 편에서는 교육사적 관점에서 대리청정을 조선 왕실에서 행해졌던 하나의 교육제도로 파악하였다. 전자의 경우 전통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사건을 둘러싼 복합적인 맥락을 파악하기보다 일부 黨論書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경향이 있다. 현대정치의 본질이 인간의 이기심과 권력 투쟁이라지만, 이것만으로 조선의 역사를 해석하는 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후자의 경우 당시의 정치 논리나 배경은 무시하고, 제도적 완전성만을 강조하여 조선시대를 미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는 당시의 현실적 수요와 정치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의 방향성은 애초에 肅宗代의 대리청정 사례를 후속 대리청정 사례들과 함께 연계해서 파악해 보려던 최초의 문제의식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肅宗代의 왕세자 대리청정은 국왕이 질병으로 인해 도저히 國政을 처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조치였

다. 당시의 논의 과정에서 肅宗과 관료들은 세자에게 聽政을 시키는 것 외에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었으며, 오히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안은 聽政을 하게 될 주체, 즉 세자의 교체에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肅宗代의 왕세자 대리청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자 교체'라는 사안이 조선의 정치사회에서 의미하던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을 포착할 수 있었다.

肅宗은 세자의 奇疾을 이유로 국정 처리 능력에 의문을 품고 세자를 교체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의 관료집단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결국 肅宗은 세자를 교체하지 않고 聽政을 시키게 되었다. 이때의 논의 과정은 당시의 정치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국정 운영에 있어서 京鄕間 · 黨派間 소통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국왕과 국왕을 둘러싼 일부 신료들 사이의 밀실정치로 표현할 만한 움직임도 발견되었다.

肅宗末의 왕실과 관료집단의 동향은 세자의 입지를 위축시켰으나, 肅宗의 세자교체 주장과 맞닥뜨렸을 때 세자의 전격적인 교체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오히려 세자가 갖고 있는 결함에도 불구하고 세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는 당시 정국을 주도하던 老論系 관료들의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과 반대 세력들의 반발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왕세자 대리청정의 명분상의 근거 및 시행 타당성에 관한 논란은 앞서 世宗代에 이미 진행된 바가 있었다. 조선왕조는 祖宗朝의 故事, 이른바 先王의 法에 커다란 권위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전통은 先王의 행위에 관념적인 명분을 부여하는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조정의 논의를 거친 사안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정책의 입안 및 개혁에 매번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현실적인 이점도 가지고 있었다.

肅宗代의 聽政節目을 검토하면서 본고에서는 대리청정의 시행 목적에 착안, 그 가운데 왕과 세자 간의 업무 분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된다고 파악하였다. 肅宗은 관료 인사권과 관련된 사안이나 국정 업무 가운데 중요한 사안들만 선별적으로 분류하여 직접 처리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국왕의 업무가 어떠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대리청정이라는 조치에

대한 숙종의 태도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肅宗代의 대리청정은 실질적인 성과와는 별개로 18세기 전반에 걸쳐 꾸준히 시도되어 일종의 制度化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왕실의 常例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이는 후대의 왕들이 肅宗代에 마련된 제도가 충분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이유를 제도상의 결함에서 찾지 않고, 그것에서 현실적으로 계승할 만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肅宗代의 대리청정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에도 후대에 계승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 肅宗代의 사례가 국가의 업무, 즉 국왕의 업무가 과중해진 상황에서 국왕의 업무를 누군가와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가능성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는 先王의 法에 커다란 권위를 부여하는 조선왕실의 전통과 앞서 언급한 당시의 정치적 · 사회적 배경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발생한 현상으로, 관습처럼 이어져 내려오던 기존의 유교적 명분론과 국가 체제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크게 위배되지 않는 일종의 현실적인 타협안이었다.

본고에서 肅宗代의 대리청정 사례를 검토한 결과, 최소한 肅宗代의 사례에 있어서만큼은 기존의 당쟁사적 시각이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당시의 현실적인 수요와 정치문화사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조선후기 정치문화의 일단과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체제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당시의 정치가 당면하고 있던 과제들과 함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노출하고 있던 한계도 파악할 수 있었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던 내용 가운데 18세기 조선 정치사의 특징적인 면모를 포착하고자 시도한 것에 있어서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통시적인 안목으로 사건을 충분히 조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노출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여러 사례들 가운데 단일 사례만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까지 추측이나 가설에 불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속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오류를 수정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추후 과제를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Ⅰ. 원문 · 번역서 · 자료집

1. 원문

『朝鮮王朝實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DB)
『承政院日記』(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DB)
『備邊司謄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DB)
『萬機要覽』(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 1151)
『春官通考』(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 12272)
『侍講院志』上 · 下(2003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奎貴 907)
『御定离院條例』(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 5653)
『增補文獻備考』上 · 下(1981 명문당 영인본)
『遷拜錄』(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 7677)
閔鎭遠,『丹巖漫錄』(한국학중앙연구원, K3-0613)
李肯翊,『練藜室記述』(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李建昌,『黨議通略』(京城朝鮮光文會 鉛印本, 한국학중앙연구원, B6B-8)

2. 번역서 · 자료집

성백효 역주, 1998『書經集傳』上 · 下, 전통문화연구회
민족문화추진회 편, 2006『(신편국역)국조보감』, 한국학술정보
조두순 외, 한국법제연구원 역주, 2000『大典會通』, 한국법제연구원
혜경궁홍씨, 정병설 주석, 2010『원본 한중록』, 문학동네
혜경궁홍씨, 이선형 역, 2003『한중록』, 서해문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 편저, 2009『정조어찰첩』,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9『숙빈최씨자료집』1-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1『영조대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영조대왕자료집』1-4, 한국학중앙연구원

Ⅱ. 연구논저

1. 단행본

김용숙, 1987『朝鮮朝 宮中風俗硏究』, 일지사
이은순, 1988『朝鮮後期黨爭史硏究』, 일조각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정치사연구반, 1990『조선 정치사, 1800-1863』上 · 下 , 청년사
이성무 · 정만조 외, 1992『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희환, 1995『조선후기 당쟁연구』, 국학자료원
이영춘, 1998『朝鮮後期 王位繼承 硏究』, 집문당
박광용, 1998『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신명호, 2002『조선왕실의 의례와 생활』, 돌베게
_____, 2005『조선왕실의 자녀교육법』, 시공사
이태진 편, 2003『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태학사
김문식 · 김정호, 2003『조선의 왕세자교육』, 김영사
박영규, 2003『조선의 왕실과 외척』, 김영사
최승희, 2005『조선초기 정치문화의 이해』, 지식산업사
육수화, 2008『조선시대 왕실교육』, 민속원
김덕진, 2009『대기근, 조선을 뒤덮다-우리가 몰랐던 17세기의 또 다른 역사』, 푸른역사
이종호, 2009『영조를 만든 경종의 그늘』, 글항아리
한명기, 2009『정묘 · 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정만조, 2010『한국 역사상 관료제 운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출판부
신병주 외, 2010『조선의 통치철학』, 푸른역사
김인걸 외, 2011『정조와 정조시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11『조선의 왕으로 살아가기』, 돌베게
_____, 2013『조선의 세자로 살아가기』, 돌베게
이태진 외, 2011 『조선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上 · 下, 태학사
정병설, 2012『권력과 인간』, 문학동네
한명기 · 신병주 · 강문식, 2013『왕과 아들-조선시대 왕위계승사』, 책과함께
국사편찬위원회, 1998『한국사 30-조선중기의 정치와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_____, 1997『한국사 32-조선후기의 정치』, 국사편찬위원회
Jonathan D. Spence, 이준갑 옮김, 2001『강희제』, 이산(Jonathan D. Spence, 1974『Emperor of China: Self-Portrait of K'ang-hsi』, Alfred A. Knopf)
王鏡輪, 이영옥 옮김, 2007『중국의 황태자 교육』, 김영사
James B. Palais, 김범 옮김, 2008『유교적 경세론과 조선의 제도들-유형원과 조선후기』1 · 2, 산처럼(James B. Palais, 1996『Confucian Statecraft and Korean Institutions- Yu Hyoungwon and the Late Choson Dynasty』,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 논문

오갑균, 1972「景宗朝에 있어서의 老少 對立」『청주교육대학논문집』8
_____, 1977「景宗의 生涯와 施政에 대한 一考察」『청주교육대학논문집』13
_____, 1999「정조초의 왕권확립과 시벽론」『청주교육대학논문집』36
이은순, 1986「18세기 노론일당전제의 성립과정」『역사학보』110
신용우, 1987「翼宗 代理聽政에 대한 考察 : 代聽施行 過程과 政務處理를 中心

으로」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_____, 1989「肅宗時世子聽政에 대하여 : 世子聽政下敎와 節目을 中心으로」『송원대학논문집』15
정만조, 1990「肅宗朝 良役變通論의 展開와 良役對策」『국사관논총』17
_____, 2005「18세기 조선의 사회체제 동요와 그 대응론」『한국학논총』27
이희환, 1992「景宗代의 辛丑換局과 壬寅獄事」『전북사학』15
_____, 1993「英祖代 蕩平策의 실상(上)」,『전북사학』16
_____, 2000「李光佐의 정치활동과 老 · 少論의 대립」,『조선시대사학보』14
김순남, 1993「僉事院의 設置와 그 政治的 性格」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_____, 2005「朝鮮世宗代 말엽의 政治的 推移 - 世子의 代理聽政과 國王 · 言官間의 갈등」『史叢』61
정경희, 1993「肅宗代 蕩平論과 '蕩平'의 시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기순, 1997「朝鮮時代 侍講院에 관한 一硏究 - 特히 仁祖代의 侍講院을 中心으로」『조선전기논문선집』38/정치(6), 삼귀문화사
이석규, 1997「朝鮮初期 書筵硏究」『조선전기논문선집』38/정치(6), 삼귀문화사
김명숙, 1997「19世紀 反外戚勢力의 政治動向 - 純祖朝 孝明世子의 代理聽政 例를 中 心으로」『조선시대사학보』3
_____, 2004「19세기 정치론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05「《翼宗代聽時日錄》의 편찬과 정치사적 의의」,『동학연구』19
한용진, 1998「서연(書筵)의 교육이념과 성격」『교육문제연구』10
한춘순, 1999「明宗代 垂簾聽政期(1545~1553년)의 '勳戚政治' 成立과 軍營構造」『한국사연구』106
_____, 2005「文宗代의 國政運營」『조선시대사학보』33
최옥환, 2001「思悼世子의 罪와 罰」『전북사학』24
임혜련, 2003「조선시대 수렴청정의 정비과정」『조선시대사학보』27
_____, 2008「19세기 垂簾聽政 硏究」, 숙명여대 박사학위 논문
_____, 2009「19세기 수렴청정의 특징-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조선시대사학보』48
_____, 2010「조선 숙종비 인원왕후의 가례와 정치적 역할」『한국인물사연

구』13
_____, 2012「한국사에서 섭정 · 수렴청정권의 변화 양상」『한국사상과 문화』62
이효석 · 전봉희, 2004「朝鮮時代 代理聽政期 世子의 朝參 行禮와 空間 調節」『대한건축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24-2
김정화, 2004「朝鮮 英 · 正祖代 世子(世孫)敎育의 實態」,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상식, 2005「朝鮮後期 肅宗의 政局運營과 王權 硏究」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윤 정, 2007「18세기 국왕의 文治사상 연구: 祖宗事蹟의 재인식과 繼志述事의 실현」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장종진, 2008「肅宗의 景宗 王位繼承 의도 검토」『남도문화연구』14
김영민, 2008「사도세자의 생애와 '임오화변'의 정치적 의의」『역사문화논총』4
이민아, 2008「孝明世子 · 憲宗代 宮闕營建의 政治史的 의의」『한국사론』54
이강근, 2008「조선왕조의 궁궐건축과 정치 : 세자궁의 변천을 중심으로」『한국미술사교육학회지』22
문재윤, 2008「조선초기 '법조' 정치원리의 정립 :『조선왕조실록』과 『국조보감』을 중심으로」『21세기정치학회보』18
육수화, 2009「정조의 성장과정을 통해 본 조선후기 왕위계승교육」『동양고전연구』37
조미은, 2010「조선시대 왕세자 대리청정기 문서 연구」『고문서연구』36
최종석, 2010「조선초기 '時王之制' 논의 구조의 특징과 중화보편의 추구」『조선시대사학보』52
송지원, 2011「정조대 의례 정비와 『春官通考』편찬」『규장각』38
오수창, 2012「18세기 조선 정치사상과 그 전후 맥락」『역사학보』213
윤 정, 2012「숙종 45년, 국왕의 기로소 입소 경위와 그 정치적 함의」『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43

【Abstract】

A Study on the Proxy Administration by the Crown Prince Regent in King Sukjong's Reign

Choe Hyoungbo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xy administration by a prince regent was continually attempted in the late Chosŏn dynasty from the 18th century, which was a remarkable political phenomenon. The one in King Sukjong's reign was the first proxy administration enforced in the late Chosŏn dynasty, and is examined in this article to understand the political culture of the time.

This study introduces the arguments surrounding the enforcement of the proxy administration, and discusses the organization of Chŏngjŏngjŏlmok(聽政節目)—the detailed regulations of enforcement of the proxy administration—and its effect on the future political system. I tried to move beyond the existing theories, since most of them are biased towards a struggle among political parties over the gain and loss of power or address conspiracy or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powers—the sovereign and its courtiers—, or only focus on the perspective of education, contending that the proxy administration was conducted for the political and practical education of the crown prince.

The proxy administration enforced by the prince regent (who was crowned King Gyungjong) for 3 years (1717～1720) was a significant political issue in

that it was an extension of a terrific and bloody struggle for power among the political parties in the 17th century and was closely linked with Shinyimoksa(辛壬獄事) in King Gyungjong's reign and Mushinran(戊申亂) in King Youngjo's reign. It was also meaningful as a classic example of the later proxy administrations, which were continually conducted in the late Chosŏn Dynasty from the 18th century.

The study showed that the main issue was not whether or not the proxy administration should be enforced, but whether the crown prince should be replaced. That was the main argument surrounding the proxy administration by the prince regent, since the crown prince in office had fatal defects as a political leader due to mental health problems, sexual function disorders, and a lack of the capabilities required to serve as king. In the midst of the controversy, it was Sukjong who insisted that the prince should be replaced, and it was the ruling power, Noron(老論), which persuaded Sukjong to order the prince in office to rule the Chosŏn Dynasty as regent, helping his father, Sukjong.

In the political culture of the Chosŏn Dynasty, the controversy relating to the substitution of the crown prince transcended matters of parties' interests or political maneuvering. In fact, it was an established occurrence that a reign, once losing Confucian legitimacy and justice, did not last long. The character of the Chosŏn Dynasty, which was based on the teachings of Confucianism and supported by the ruling power base of scholar bureaucrats(士大夫層), would be the critical factor in the political history of the Chosŏn Dynasty.

Once a proxy administration was determined to be enforced, Sukjong and bureaucrats administered Chŏngjŏngjŏlmok, which closely followed the precedent in King Sejong's reign. It reflected the nature of the Chosŏn Dynasty that the deeds of preceding kings were the most important grounds on which the policies by the following kings were administered, as is evidenced by the fact that the following proxy administrations were modeled on and enforced based

on the one in King Sukjong’s reign.

Chŏngjŏngjŏlmok distinguished the standing between the current king and the prince regent, while it treated the prince regent with respect as head of a minor royal court(小朝) with concrete, detailed regulations of enforcement. And it is evidenced by the fact that important tasks would be reported to Sukjong even though some of his duties were transferred to the prince regent to lighten the burden of the king who was gravely ill at that time. It seemed that Sukjong valued the authority over personnel affairs above all, which was the core basis of royal authority.

The royal prince's illness prevented the proxy administration in King Sukjong’s reign from successfully achieving its goals; however, we found that the proxy administration at the time was still meaningful in that it influenced the later systems and supported the following kings to share some duties with the prince regent and not be overburdened with duties. The late Chosŏn Dynasty was struggling with the limits of the traditional and idealistic ruling system of the nation, having experienced sudden changes in society after international wars surrounding East Asia during the late 16th and early 17th centuries. However, in the old and stable Confucian ruling system, a king would not be allowed to turn over the throne to the crown prince for the reason that he was not capable of performing all his duties. Therefore, proxy administration enacted by a prince regent seemed to be the most practical alternative that did not threaten the stability of the national system and Confucian justice.

Key words : Sukjong(肅宗), crown prince, Gyungjong(景宗), regent, Chŏngjŏngjŏlmok(聽政節目), throne succession

Student Number : 2008-20047